

2017



第三十三輯

# 治安論叢

警察大學 治安政策研究所

# 총 목 차

- ◆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 1
  
- ◆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결정 요인 비교연구 ..... 107
  
- ◆ 경찰활동에서의 드론(무인항공기) 활용방안과 그 법적 문제 연구 ..... 217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결정 요인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연구진》

연구위원: 김 정 림 (미국 머시대학교 교수)

연구원: 임 형 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 목 차

<b>제1장 서론</b> .....	113
제1절 본 연구의 중요성 .....	113
제2절 문제제기 .....	114
제3절 간략한 선행연구 소개 .....	117
제4절 본 연구의 목적 .....	121
<b>제2장 선행문헌연구</b> .....	123
제1절 이론적 기틀 .....	123
제2절 종속변수(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 Expected Behavior) .....	132
1. 준법행동 .....	132
2. 공권력에 대한 협조(Cooperation with Legal Authority) .....	133
3. 참 여 .....	134
제3절 독립변수 .....	136
1. 정당성 (Legitimacy) .....	136
2. 평가 (Evaluations of Performance) .....	141
3. 개인의 경험 .....	142
제4절 통제변수 .....	143
1. 성 별 .....	143
2. 연 령 .....	144
3. 소득수준 .....	144
4. 개인의 교육수준 .....	144

<b>제3장 방법론 (Methodology)</b> .....	146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146
제2절 설 문 :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	148
1. 본 설문을 선택한 이유 .....	148
2. 설문의 구성 .....	148
제3절 표 본 .....	149
1. 한 국 .....	149
2. 미 국 : 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한 Tyler와 Jackson의 자료 .....	149
제4절 변수측정 .....	150
1. 종속변수 .....	150
2. 독립변수 .....	154
<b>제4장 자료 분석 및 비교</b> .....	162
제1절 법과 경찰의 정당성 .....	162
제2절 인구동태학적 특성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164
제3절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이 순응에 미치는 영향 .....	165
제4절 정당성과 경찰에 대한 협력 .....	168
제5절 정당성과 지역사회 관여 .....	170
제6절 시민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각 정당성 요소들의 역할 .....	172
제7절 경찰과 법에 대한 일반적 판단이 경찰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174
제8절 인적 경찰접촉 경험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176
<b>제5장 토의, 한계 및 향후 연구</b> .....	179
제1절 토 의 .....	179
1. 한미 양국 경찰정당성 연구결과 차이의 원인 .....	179
2. 왜 경찰의 활동은 절차론을 통하여 평가되어야 하는가? .....	183

제2절 한계 및 향후 연구 .....	186
1. 본 연구의 한계 .....	186
2. 향후 연구의 방향 .....	187
<b>제6장 정책제시 .....</b>	<b>188</b>
제1절 기관강령(Mission Statement) .....	189
제2절 경찰훈련 프로그램 .....	190
제3절 경찰문화와 관행 개선 .....	191
<b>제7장 결 론 .....</b>	<b>193</b>
부록 1: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값 .....	202
부록 2: 주요 변수의 영차상관 (Zero Order Correlation) .....	203
부록 3: 설 문 .....	204

## ●●● 표 목 차

〈표 1〉 법과 경찰의 정당성 .....	162
〈표 1-1〉 법과 경찰의 정당성 (미국) .....	163
〈표 2〉 인구동태적 특성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164
〈표 3〉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이 순응에 미치는 영향 .....	166
〈표 3-1〉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이 순응에 미치는 영향 (미국) .....	167
〈표 4〉 정당성과 경찰에 대한 협력 .....	168
〈표 5〉 정당성과 지역사회 관여 .....	171
〈표 6〉 시민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각 정당성 요소들의 역할 .....	172
〈표 7〉 경찰과 법에 대한 일반적 판단이 경찰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175
〈표 8〉 인적 경찰접촉 경험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177

## ●●● 그림 목 차

〈그림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	147
-------------------------	-----

# 제1장 서론

## 제1절 본 연구의 중요성

정부의 한 기능으로서의 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은 시기와 장소 그리고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경찰활동은 그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정세, 정치적 체제와 사회적 안정성 여부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우리가 속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경찰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적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류준혁, 2013; Dai, Frank, & Sun, 2011; Wells, 2007). 예를 들어, 시민이 경찰의 업무수행을 정당하고 공평하다고(legitimate and fair) 느낄 때 시민의 위법행위가 줄어드는 대신 경찰을 지지하고 경찰업무에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연구결과 등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보 및 시민의 준법정신을 고양하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Tyler, 2006; Wells, 2007).

기존의 경찰활동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이 발견한 결과들에 의하면, 시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경찰이 무엇을 하였는가(가령, 범죄자를 체포하고 범죄발생율을 낮추는 등) 하는 업무수행의 결과론적 요소보다, 경찰이 그들의 임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는가(가령,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였는가) 하는 업무수행의 절차론적 요소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Tyler, 2006; Tyler, Rasinski, & Griffin, 1986; Wells, 2007). 따라서 이러한 시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 역시,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경찰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의제 등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찰활동 및 경찰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선행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요소들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유럽 다수 국가의 다양한 인구의 태도, 신념, 행동 등을 측정, 분석해 온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를 활용하여 우리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긍정적 인식과 평가에 부합하는 경찰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문제제기

민주사회에서의 경찰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인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의 준법행위를 확보하고자 할 때,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민의 위법행위를 처벌(위협)하는 한편 준법행위는 보상(유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외부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고(제도적 접근방법), 다른 하나는 시민이 아무런 외부적 위협이나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는 행위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여 사회규범에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내부적 동기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다(규범적 접근방법).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법은 각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먼저 제도적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준법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위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접근방법으로, 주로 단기적 성과를 거두는데 주효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외압적인 접근방법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계속 소

요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Tyler, 2006). 즉, 사회구성원을 처벌위협과 같은 외압적인 방법에 의하여 타의적, 수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동시에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누가 일탈행위로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구성원 모두를 잠정적 일탈자로 간주하고, 모두의 잠정적 위법 가능성을 늘 감시해야 한다는 정책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체 구성원의 사회적 행동의 통제를 처벌위협과 보상유인이라는 인위적인 제도적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민주사회 내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물리적 측면에서도 불가능할뿐더러, 혹 백번 양보하여 가능하다고 가상하더라도 그 사회의 전체 구성원 모두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천문학적 자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규범적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이 접근 방법은 시민의 법 준수행위를 처벌 위협 및 보상유인과 같은 외부적통제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대신, 시민이 법집행기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법집행기관이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부적 동기의 부여 및 유도를 통하여 시민들에 대한 외부감시가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방법이다. 이렇듯 시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규범적 접근 방법은, 시민 개개인이 사회질서규범에 내면적으로 동조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려는 것으로, 내면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측면에서 볼 때 제도적 접근방법과 같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행동을 제어하려는 방법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만약 시민이 외부감시를 통한 처벌위협과 같은 외압적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스스로 위법행위를 거부하는 한편, 준법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확신 및 신념을 지니고 자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법을 준수한다면, 경찰기관은 시민감시에 소요되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그 기관의 목적을 중장기적으로, 또한 지속적이면서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는, 비용 및 효과적인 측면 모두에서 규범적

접근방법이 제도적 접근방법보다 시민, 경찰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시민의 준법행위를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이면서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편으로 제도적 접근방법보다는 규범적 접근방법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동의하더라도, 이러한 논의에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실제 구현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실천방법론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의 내면의 의식변화를 누가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방법론적 문제를 모색하여야 하고, 설령 시민의 의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준법행위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실증적인 문제, 그리고 연결된다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상관관계론적인 문제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증적이면서도 상관관계론적 문제인 인식과 행동의 연관성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 내 다수의 실증적 선행연구들은 이미 시민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준법행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시민들이 법집행기관의 정당성 및 효과성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에 시민들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또한 사회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발견 등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윤우석 & 홍태경, 2014; Hough, Jackson, & Bradford, 2016; Kaiser, 2016; Tyler & Jackson, 2014). 이에 대하여 전자인 실질적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준법에 대한 긍정적 확신 및 신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법집행 기관의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인식을 지목하고 있다(Kaiser, 2016).

이에 대하여 부연설명하자면, 경찰기관과 같은 법집행기관의 존재자체에 정당성이 있다고 시민들이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 기관의 활동 역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에, 시민들은 감시를 통한 처벌위협이나 보상유인과 같은 외부적 압력이나 유인이 없어도, 자발적, 능동적으로 법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기관 및 경찰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시민의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및 강화의 차원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절감된 예산과 노력으로 경

찰활동의 기관목적은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제3절 간략한 선행연구 소개

본 연구의 주제인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시민의 준법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이 왜 법을 지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논의가 지난 40년간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등을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Hough et al., 2016; Hyde, 1983; Levi, 1997; Putnam, 2000; Thibaut & Walker, 1975). 시민의 준법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쾌락주의(hedonism)적 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사회행동을 파악하는 관점으로, 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공권력으로 부터의 처벌에 수반되는 고통을 피하고, 그것보다는 주어진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가 제공하는 제도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과 같은 쾌락을 취하려고 한다는 이성적, 산술 계산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다수의 법학자들과 법률연구가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을 제시할 때 기반을 두어 온 관점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특정 행동을 억제하려는 제도적 관점(instrumental perspective)에서의 형사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Tyler, 2006).

이에 반하여 도덕주의(moralism)적 관점에서는, 처벌의 위협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의 행동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개인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시민들이 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와 동시에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 일종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Tyler, 2006). 이러한 도덕주의적 관점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편의성 및 금전적인 이익 등과 같은 목전의 단기적인 이익을 외면하고, 당장은 불편하

더라도 법을 지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사회적 공공선을 우선하고, 또한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시민의 도덕적이며 규범적인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질서의 확보는 시민의 규범적 사고의 고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범적 관점(normative perspective)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규범적 관점은 시민들이 공권력의 존재와 행사를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인식할 때에 그 공권력을 더욱 지지하고, 또한 그 공권력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두 관점을 요약하자면, 인간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제도적 관점은 기존 사법정책연구의 전형적인 틀을 이루어 오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사회적 행동을 규범 등을 통한 처벌위협과 보상유인이라는 '채찍과 당근'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연구들을 진행시켜왔다. 이에 반하여 인간을 목전의 이익보다는 높은 가치의 사회공공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규범적 관점은, 개인의 형사사법제도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호작용이 그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즉 개인의 법집행기관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이 긍정적이면 그 개인은 법집행기관을 지지하고 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되며, 그와 반대로 법집행기관과 관련된 인식과 경험이 부정적이면 그 법집행기관을 지지하지 않으며 법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시민의 준법행동을 시민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인식 등의 변화를 통하여 유도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sup>1)</sup>

1) 이상의 두 관점에 상응하는 개인의 법기관에 대한 태도는 "왜 법기관의 지시에 순응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간략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혹자는 법기관이 정당하기 때문에 (또는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법기관의 지시에 따른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이와는 달리 다른 혹자는 법기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치루어야 할 대가를 피할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기관의 지시에 따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규범적 관점에 상응할 것이고, 후자는 제도적 관점에 상응한다고 할 것이다 (Tankebe, 2013).

위의 두 가지 관점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에 서고 있다. 즉, 제도적 관점은 사회적 문제해결이나 시민분쟁해결의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결과지향적인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반면, 규범적 관점은 사회적 문제해결이나 시민분쟁 해결의 절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하고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과정지향적인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Tyler, 2006). 비록 이러한 두 관점은 용어상으로는 일견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집행기관의 기관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의 법률체계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즉, 경찰기관과 같은 법집행기관은 기관의 구성, 운용 및 법집행 활동을 정당하고 공정, 공평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이 자의적,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하고 법규범을 지켜 나가도록 하여 사회질서 확보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절감하고도 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하겠지만(규범적 관점), 그러한 규범적 노력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처벌을 통하여 타의적, 강제적으로나마 법에 대한 복종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제도적 관점). 따라서 위의 두 관점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것이다. 다만, 외견상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관점이 기관목적의 달성을 위해 효율적,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두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균형에 관한 문제를 갖게 된다.<sup>2)</sup>

이러한 균형문제와 관련된 한 연구를 예시하자면, 예일대 심리학 및 법대 교수인 Tyler(2006)는 시민들이 공권력(legal authority)이 정당성(legitimacy)을 지니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벌과 범죄위화효과(deterrence effect)의 관계가 역U자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법률위반행위를 처벌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법률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일정한 정도를 지나면 법률위반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Clear (1996, 2007)는 교도소 등의 사법시설 내의 수감인원이 일정한 수를 넘고 또 수감기간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고 인식할 때에 더욱 법에 순응(compliance)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법집행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권력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인다는 가정이 옳음을 발견하였다. Tyler(2006)는 Paternoster, Saltzman, Waldo, 그리고 Chiricos(1984)가 발견한 공권력의 처벌을 통한 억제효과 (influence of deterrence)가 시민의 준법(compliance with the law)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배분적 정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절차적 정의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Wright 와 Decker(1997)는 86명의 유죄판결을 받은 무장강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형사처벌을 통한 위하효과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발견하였고, Kennedy(2009) 역시 범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의 손익계산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형사처벌을 통한 범죄억제전략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Doob과 Webster(2003)는 30년 동안의 형사처벌에 관한 주요연구들을 분석하여, 엄격한 처벌이 범죄를 저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하려는 제도적 관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sup>3)</sup>

이와 아울러 다수의 실증적 연구들 역시 공권력의 정당성과 시민들의 법에 대한 순응이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공권력의 정당성과 시민의 공권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을 살펴 본 다수의 연구들은, 시민들이 법집행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보다는 업무수행 과정의 정당성(또는 공평성, 공정성 등)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nshine & Tyler, 2003; Thibaut & Walker, 1975; Tyler, 1996; Tyler & Jackson, 2014).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법집행의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가(배분적 정의, 가령 경찰이 법집행을 통하여 그 법집행과 관련된 당사자

3) 하지만 제도적 관점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1919년 9월 10일, 약 1100명 가량의 보스턴 경찰관들이 파업에 돌입하였을 때에, 거의 동시에 소요, 약탈, 손괴 등의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수백만 달러의 물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날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5000명 가량의 주 방위군을 동원하여 치안을 회복하였다 (Schmallegger & Worrall, 2010). 또한 1969년 가을, 캐나다 몬트리올 경찰들이 16시간 파업에 들어갔을 때, 조용하고도 평온했던 몬트리올의 거리가 은행강도들로 인해 거의 모든 은행이 문들 닫고, 약탈자들이 도심지 상가의 유리창들을 부수고 다녔으며, 폭력사태가 급증하는 등 도심지가 거의 무법천지에 가까울 정도로 혼란에 빠져 들었는데, 경찰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 (Gladwell, 2015). 이는 시민들이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 법에 복종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적 관점보다는, 법집행 과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절차적 정의, 가령 경찰이 법집행 과정에서 그 법집행에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고 최종 결정에 반영하는지 등)와 관련된 규범적 관점이 법집행 실효성 확보측면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 제4절 본 연구의 목적

민주사회 내의 경찰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 법에 기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 이해 상충적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익이라는 대립하기 쉬운 두 가지 목적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두 목적 사이의 균형점이 그 시대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으로 가령 911 테러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법집행의 균형점이 옮겨간 것과 같은 예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균형점을 매번 개인의 자유의 가치와 사회공익의 가치를 개량하여 그 합을 이분함으로써 균형점을 파악, 접근하고 달성하려는 시도보다는, 경찰활동의 전반적인 절차를 균형점에 근접하도록 표준화함으로써 개별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산술적 노력 없이도 경찰활동이 시민이 공감하는 균형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법집행 결과에 초점을 맞춘 배분적 정의에 기한 제도적 관점이 반영된 공권력의 법집행과, 법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절차적 정의에 기한 규범적 관점이 반영된 공권력의 법집행이, 어떻게 달리(혹은 같이) 시민의 준법 및 공권력에의 협조,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설문(European Social Survey)으로 수집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한국 경찰정책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선행문헌연구

### 제1절 이론적 기틀

기존의 전통적인 법 정책수립과 그 수립된 정책의 집행은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된 중앙집권적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수행되었다(Tyler, 2006). 이러한 형태의 법운용 방식은 명령과 복종이라는 관료제적 조직 구성 및 운용에 적용되는 기본적 조직원리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법집행기관은 명령을 통하여 시민의 행동을 규율하고, 시민은 법집행기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형태인 것이다(Tyler & Jackson, 2014). 이러한 사고의 틀을 단순화하여 관찰하면, 이는 소수인 권력 엘리트와 다수인 대중을 통치자와 피치자, 혹은 주종의 관계로 보는 권위주의적 혹은 전제주의적 정치체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중이 권력자의 의중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범죄통제 문제에 있어서도 대중의 역할을 비교적 수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대중을 전문적인 법집행기관의 범죄통제의 수동적 수혜자로 보고, 이러한 수혜적 범죄통제정책에 대중이 순응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Kelling & Moore, 1988).

하지만 사회계약론을 투영하는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권력 엘리트의 의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 정치과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권력 엘리트의 의도와 시민의 수용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매개체는 권력 엘리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협박 및 준법행위에 대한 보상회유로부터 시민 도덕성에 대한 호소 및 설득, 그리고 권력구조의 합법성 및 정당성 강화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법집행기관이 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사법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규율들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Fuller, 1969). 그러한 여건은 권력 엘리트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나 강압적 여건 조성은 합법성 및

실효성의 문제를 동반하므로, 그 보다는 시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자발적 여건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sup>4)</sup> 이는 우리 사회의 법집행기관의 법집행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민주사회의 법집행기관은 법집행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기관목적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안전성과 관련된 공공선 추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법집행기관은, 그들이 수행하는 법집행행위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법에 대한 순응(compliance)이라는 호의적인 여건을 통하여 실효성을 갖고 성과를 거두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만약 경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이 처벌위협 등을 통하여 시민의 법 준수를 강요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한다면, 시민과 경찰 사이의 마찰가능성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집행 성과의 상당부분이 시민들의 순응을 통하여 확보되는 바람직한 여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집행기관이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시민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방법론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하여 전술한 배분적 정의개념에 기한 제도적 접근방법은, 시민들의 준법에 대한 동기는 법집행 기관이 위법에 대한 처벌 위협과 준법에 대한 보상유인이라는 외압적 요인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법집행기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시민의 법집행기관과의 접촉의 결과에 따른 배분적 정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sup>5)</sup>

이에 대하여 절차적 정의개념에 기한 규범적 접근방법은, 시민들의 준법에 대한 동

4) 민주사회 내에서도 권력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괴리가 생겨 자신의 권력을 지지하기 어려울 경우, 권력 엘리트가 계엄령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합법성의 문제와 아울러 대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그 실효성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5) 가령, 경찰의 결정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와 반대로 경찰의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등.

기는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시민 스스로 내부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며, 다만 법집행기관은 그러한 시민의 법집행 기관에 대한 자발적 순응을 돕고 촉진하기 위하여, 법집행절차를 더욱 공정, 공평하게 하는 절차적 정의개념에 충실함으로써<sup>6)</sup> 시민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시민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지 및 법에 대한 순응으로 나타나는 선순환적 현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법에 대한 그동안의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제도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시민들의 위법행위 처벌 및 준법행위의 보상이라는 외압적 방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임에 전반적으로 동감하며 제도적 접근방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Easton, 1965 ; Kelman, 1969 ; Parsons, 1967 ; Scheingold, 1974).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은 대략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법률로 모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접근방법의 법률만능주의적 사고는 시민 개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그들의 내면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있다. 즉, 시민 개개인의 내면적 동기를 고려함 없이 외부로 노출되는 그들의 사회적 행동에만 관심을 갖고 이러한 행동만 통제하려는 노력은, 인간행위의 복잡성을 간과한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임기응변적 대처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제도적 접근방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모든 사회적 행위를 구체적 법조항에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간행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개인의 동일한 사회적 행위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사회적,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법률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즉, 법제정에 있어서 지극히 어려운 이론적,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의 미풍양속’이나 ‘사회상규’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한 일반적 법조항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일반적 법조항의 사

6) 가령, 경찰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그러한 의견을 경찰결정에 납득이 가도록 반영하여 관련당사자가 절차의 공정성, 공평성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를 법률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반증으로 제도적 접근방법의 기술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처벌위협과 보상유인이라는 외부적 동기를 통해서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처벌받는다 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인지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시민 개개인에 대한 감시망 구축, 가령 CCTV의 전방위적 설치, 그리고 모든 시민 감시에 충분할 정도의 경찰관 증원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시민에 대한 감시망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감시망 건설과 운영, 유지에 투여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정부가 편성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먼저 봉착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Tyler, 2006).

이에 반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공권력의 감시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자발적 준법행위 및 법집행기관에의 지지 및 협조,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규범론적 접근방법에서 더 큰 실효적 실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류준혁, 2012; Smith & Hawkins, 1973; Tyler & Jackson, 2014).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 사회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연구들은 시민들의 법에 대한 순응성과 관련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그러한 요소들 중 특히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통제가 가능한 요소들에 더욱 주목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성과 관련되는 요소들에는 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지리학적 여건, 공권력의 법집행 관행, 시민 개개인의 특성, 즉, 성별, 연령, 학력 및 소득수준, 직업, 정치적·도덕적 성향, 과거 공권력과의 개인적 접촉경험을 통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 그리고 현재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태도 등이 거론되어 왔다.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에 기여하는 요소를 찾기 위하여 더하여진 다양한 연구노력의 결실 중의 하나는, 시민들이 법집행기관의 정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에 더욱 법을 지키고, 법집행기관을 지지하며, 법집행정책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

다는 것이다(Tyler & Jackson, 2014). 시민의 법집행기관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법에 대한 순응성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발견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규범적 접근방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시민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무슨 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요인을 시민의 정당성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법집행기관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들이 뒤를 이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법집행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며, 또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법집행 절차와 결과에 반영할수록 시민들이 그 법집행기관의 정당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Kaiser, 2016; Payne & Gaaney, 2007).

규범적 접근방법 역시 제도적 접근방법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상술하자면 첫 번째로는, 비가시적인 인간 내면의 변화를 누가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실령 개인의 내면(감정)을 변화시켰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변화된 내면을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이론상의 실증적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변화된 내면을 통해 법에 대한 순응이라는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으로 유도한다는 다소 비가시적, 추상적인 방법이, 외부적인 사회적 행동에 직접 통제를 가하여 개인이 법에 복종하도록 하는 가시적, 구체적인 방법에 비하여 효율적,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현실적 효과성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 문제인 인간 내면성 변화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들이 개인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교육제도 및 문화개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회 시스템의 변화 모색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사회 시스템 내에서도 법집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을 발견하였다(Tyler, 2006). 두 번째 이론적 실증적 문제에 대하여는 역시 실증적 연구들은 시민의 정당성에 대한 내면의 인식이 그들의 법에 대한 태

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Barkworth & Murphy, 2014; Scheuerman, 2013). 마지막으로,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현실성에 대한 문제는, 민주사회 내에서는 법집행기관의 기능이 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한계성을 감안할 때, 시민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자발적 협조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시민이 법집행기관에 협조할 때 시민-법집행기관 간의 대립, 충돌과 같은 사회적 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법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범적 접근방법은 기관의 정당성과 같은 요소를 법집행기관의 존재를 규정하는 형식적 법률로부터 발견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법집행기관의 개인에 대한 법집행 결과가 호의적인가 비호의적인가에 따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집행기관의 정책 및 그 기관 구성원의 사고가 시민의 정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법집행 절차가 시민의 시각에 얼마나 공정, 공평하게 보이는지 등에서 발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연스럽게 배분적 정의보다는 절차적 정의에 관심을 갖게 하므로, 정당성을 포함한 절차적 요소가 시민의 법집행 공권력에 대한 인식변화 노력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의 인식변화에 대한 노력이 시민들의 법에 대한 순응 및 경찰과 같은 법집행 공권력에 대한 협조로 연결된다고 믿는 것이다(Hough et al., 2016).

대부분의 절차적 정의 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절차적 정의의 기본 틀을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을 기반으로 한 기관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으로 보고 있다. 즉 기관의 정당성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이 엄정중립 및 공평한 자세를 유지하는 한편 법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존중하면서 법을 공정히 집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집행기관의 공평,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이 법집행 공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에, 시민들은 그들을 신뢰하게 되고, 지지하게 되며, 이전에 비하여 더욱 법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Hough et al., 2016).<sup>7)</sup>

7)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적정절차(due process)의 핵심 개념은 공정성(fairness) 이라고 할 수 있다(Fisher, 1988). 미국 연방최고법원판사 Rutledge는 적정절차를 개인과 개인, 그리고 특히 개인과 정부 간의 지극히 공정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절차적 정의에 관한 논의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절차적 정의의 핵심요소인 절차적 공평은 경찰과 같은 법집행 기관들이 (1) 시민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처우하고 (2) 시민을 존엄한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며 (3)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경청하고 (4) 법집행에 관한 결정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할 것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Hough et al., 2016).<sup>8)</sup> 다시 말하자면, (1) 시민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하고, (2) 시민들을 법적용의 대상이 아닌 주권자로 대우하며, (3) 시민들이 자신들이 말을 하면 법집행 기관이 듣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대우하고, 마지막으로 (4) 시민들이 법집행 결정에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성의를 가지고 대우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공평성의 구성요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공권력과 접촉하였을 때, 그 접촉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과 공권력과의 접촉이 야기하는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법집행 기관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고 주장한다(Hough et al., 2016).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은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공권력의 자세 및 업무처리과정의 ‘공평성(fairness)’에 관한 인식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시민들은 공권력이 중립적인 자세로 공평하게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인식할 때에 그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가진 시민들은 자발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법을 지킨다고 보는 것이다.<sup>9)</sup>

(In re Oliver, 1948), 공정성의 개념은 개인 인권보호에 광범위하게 원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8) 직업군이 다른 경우이지만,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제소당하는 경우를 보면, 의사들을 제소당하는 그룹과 제소 당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볼 때, 제소당하지 않는 그룹의 의사들과 제소당하는 의사들의 의료기술은 비슷하지만, 제소당하지 않는 의사들은 당하는 의사들에 비해 환자들과 평균 3분가량 환자들과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그 시간 동안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가벼운 농담도 하고, 환자들에게 이야기 할 기회를 주며, 또한 자기들의 의사가 환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등 의사소통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는 발견이라고 하겠다 (Levinson, Roter, Mullooly, Dull, & Frankel, 1997).

9) 이와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시민들이 법을 지키도록 중용하기 위하여 가하는 처벌의 강도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절차론적, 방법론적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평한 절차의 특성 및 구조를 이해하려는 대부분의 노력은 Thibaut와 Walker (1975)가 제시한 통제이론(theory of control)으로부터 출발한다. Thibaut와 Walker는 통제를 통하여 인간의 공평한 절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통제를 결과통제(decision control)<sup>10)</sup>와 절차통제(process control)<sup>11)</sup>로 이분한다.

통제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신들이 관련된 사안처리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통제하였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결과의 유리하거나 불리함을 떠나서 사안처리의 과정 자체에 참여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 절차를 통제하였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 법집행 절차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민들은 교통경찰관이 과속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자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교통범칙금 고지서 발부 없이 경고만 주고 보내준 경우보다, 교통범칙금 고지서는 발부하였지만 차량을 정차시킨 이유와 교통범칙금 고지서 처리요령 등을 운전자에게 정중하게 알려주고, 운전자가 하는 말을 들어 주는 교통경찰관에게 더욱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다(Engel, 2005).

이러한 이분론적 통제이론을 제시한 Thibaut와 Walker는, 시민의 절차적 공평성의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결과통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Tyler, 2006), 이후의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절차적 공평성에 관한 인식은 그들이 법집행 공권력과 접촉하였을 때 그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유리함이나 불리함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그들이 법집행기관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가와 같은 절차적 요인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yler, 2006). 즉, 시민들은 법집행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법집행절차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는 경향

10) 자신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가하는 결과에 대한 통제, 즉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통제. 가령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교통경찰관이 과속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거나 수단을 사용하던지 간에 그 교통경찰관이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도록 하였다면 그 운전자는 결과를 통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11) 제3자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지는 동안 자신의 입장을 그 제3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통제, 즉 그러한 기회를 갖는가 여부에 대한 통제. 가령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교통경찰관이 과속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할 때, 그에 앞서 운전자가 그 교통경찰관에게 자신이 과속을 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경찰관이 이를 경청하도록 만들었다면 그 운전자는 과정을 통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있으며, 이러한 법집행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은 법집행기관의 정당성의 바탕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법집행기관이 정당성을 가졌다고 인식할 때에 그 법집행기관을 지지하게 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법집행기관이 집행하는 법에 자발적으로 순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Friedland, Thibaut, 그리고 Walker(1973)에 의하여서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그들은 절차적 정의가 시민들의 준법행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발견함에 더하여, 이러한 연관성은 법집행 공권력이 공평한 법제정에 관여할 때에 더욱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한편, 시민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시민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시작된 시민-경찰접촉의 경우와, 경찰이 시민에게 접근하여 시작된 경찰-시민접촉의 경우를 나누어 비교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절차적 정의는 경찰의 불심검문의 경우와 같이 경찰-시민의 접촉이 경찰에 의하여 야기되었을 때가, 시민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와 같이 시민-경찰의 접촉이 시민에 의해 야기되었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Dean, 1980; Decker, 1981; Tyler & Folger, 1980). 하지만 Murphy (2009)는 시민과 경찰의 접촉이 어느 쪽에 의하여 야기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절차적 정의와 시민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과 경찰 중 어느 쪽이 접촉을 야기하였는가하는 상황유발적 조건이 절차적 정의와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절차적 적정성의 원만한 법집행 기여에 관하여, 절차적 적정성은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경찰과 접촉할 경우에도 그들로 하여금 경찰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한편, 경찰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다(Watson & Angell, 2012). 또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법집행이 공평하였다고 인식하면, 비록 법집행기관과의 접촉 결과가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

한 인식이 바로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완화하여 주는 완충 장치로도 역할 함을 발견하였다(Tyler, 2006).

위에서 살펴본 절차적 정의 이론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시민이 독립적인 공권력에 의해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권리가 적정한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인식하는 한편, 공권력이 자신들과 같은 일반적 사회가치를 공유한다고 인식할 때에 시민들은 법집행기관을 지지하고 그 기관에 협조하는 한편, 스스로 법을 지키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법집행 정책운용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Tyler & Jackson, 2014). 따라서 절차적 정의론을 지지하는 의견은 법집행의 실효성을 공권력의 강제성으로 확보하는 대신 시민의 자발성으로 확보함으로써 공권력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기관목적에 적은 노력과 자원을 동원하고도 보다 효율적, 효과적,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될 개개의 변수들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종속변수(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 Expected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경찰에 대한 어떠한 인식(독립변수)이 시민의 어떠한 행동(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관점에서, 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세 가지 측면, 즉 준법행동(compliance with the law), 경찰에 대한 협조, 그리고 참여에 대해서 관찰하였다.

### 1. 준법행동

시민의 법에 대한 태도 문제에 접근할 때 전통적인 법률만능주의적 접근방법은, 사회를 마치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을 운용하는 것과 같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전문화된 중앙집권적 공권력이 법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명

령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시민의 준법행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Tyler & Jackson, 2014). 이러한 접근방법의 사고의 틀은 대중을 수동적인 존재인 법적용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법을 통하여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의 연구들은 범죄통제의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을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 즉 시민을 법집행기관의 일방적 법집행의 대상인 피동적 수혜자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집행기관의 법집행에 반응하며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법집행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 능동적 존재로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관점의 바탕 위에서 근래의 연구들은 시민이 공권력과 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공권력과 법을 정당하다고 인식할 경우에 더욱 공권력과 법에 대한 복종심을 느끼게 되며 법을 준수하고, 나아가 공권력에 협조하고 법집행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성을 보인다고 한다(Tyler, 2006). 따라서 경찰은 대중의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경찰활동을 지양하고, 시민의 동의에 의한 경찰활동(Reiner, 2000)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 2. 공권력에 대한 협조(Cooperation with Legal Authority)

경찰의 정당성의 정도에 대한 시민의 평가 및 인식은 경찰력에 대한 협조, 경찰력의 수용(Jackson, Huq, Bradford, & Tyler, 2013), 경찰력에 대한 존중(Tyler & Huo, 2002), 일상 규범의 준수, 그리고 경찰에 대한 지지 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Sunshine & Tyler, 2003; Tyler & Fagan, 2008). Beetham (1991)은 정당성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정당성이 어떠한 권한에 종속되는 사람들에게 그 권한에 협조하는 도덕적 기반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시민들이 왜 경찰에 협조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호주인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Merphy와 Cherney(2012)는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강한 협력의사를 갖게 됨을 발견하였고, 뉴욕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unshine과 Tyler(2003)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사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에 반하여, 가나에서 경찰의 정당성을 연구한 Tankebe(2009)는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경찰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가나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사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sup>12)</sup>

### 3. 참 여<sup>13)</sup>

사회질서유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studies of long-term approach)들은, 자생적이면서도 내구성을 지닌 범죄통제요소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인 자립적인 지역사회(viable community)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Tyler & Jackson, 2014). 자립적 지역사회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민들이 서로 비슷한 사회적 도덕성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이웃과 지역사회에 친근감을 갖게 되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발생하고 진행되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며, 나아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자립적 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Loader & Walker, 2006). 이에 대한 한 예로, Sampson, Raudenbush, 그리고 Earls (1997)는 공익적 가치를 지지하는 지역의 집단적 의지(collective willingness)가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범죄와 폭력 발생율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근래의 연구들에 의하면,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 지표가 높게 나타날 때 사회적 안정성에 기

12) 이 결과에 대하여 Tankebe (2009)는 영국 식민지 시대를 거친 가나의 경찰들이 식민지 경찰로 자국민을 탄압하였었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민주성이 부족한 가나 경찰들이 국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정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등 국민들이 경찰의 주요 관심사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찰의 정당성 대신 업무효과성이 시민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13) 공권력에 대한 협조와 참여는 유사한 개념으로 용어상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분된 개념을 여기에서 밝혀 두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의 '협조'는 경찰 및 사법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어느 정도 경찰에 범죄를 신고할 것인가, 경찰이 범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형사사건의 법정 증인이 될 용의가 있는가, 용의자를 법정에서 지목할 용의가 있는가 등), 또는 경찰의 합법적이고 독점적 무력사용을 수용할 것인가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여'는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사회자본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정치적 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등으로 측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설문을 참조하기 바람.

여하는 지역사회 집합적 효용성(collective efficacy) 역시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Kochel, 2012; Sargeant, Wickes & Mazerolle, 2013).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인식은 비단 시민들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적 또는 사적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인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가령 피고용인들이 그들이 속한 조직의 방침에 동감하고 그들의 고용주 및 관리계층의 사고 및 가치관에 동질감을 가질 때, 그들은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속한 조직의 성공을 위하여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Tyler & Blader, 2000).

조직 구성원들의 집합성(collectiveness) 및 자발성(willingness)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는 가운데, Tyler와 Blader(2000, 2003)는 관리계층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느끼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질감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Tyler와 Blader는 조직 구성원들이 관리계층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갖는 동질감이 높을수록, 조직을 지원하는 태도(supportive attitudes)와 조직 정당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상승하며, 조직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참여하는 등,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느끼는 동질감이야말로 동기 부여의 핵심요소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윤병훈과 성용은(2015)은 한국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의 경찰의 정당성을 연구하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찰활동을 더 느낄수록 그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경찰의 정당성 또한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지역주민들이 경찰의 정당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또한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법준수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인식이 높을 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인식 역시 높아진다고 결론을 맺었다. 윤병훈과 성용은은 이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경찰활

동이 지역주민과 경찰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경찰이 치안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적절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들과 같은 입장에서 동일한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추구할 때, 시민들은 경찰의 권위와 권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경찰을 지지하고, 정당한 경찰이 집행하는 법에 순응하며, 시민을 위한 경찰활동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European Social Survey, 2011, 2012).

### 제3절 독립변수

#### 1. 정당성 (Legitimacy)

정당성은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정의되며 범죄학 분야에서는 이미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 및 사법기관에 대한 협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권력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정립된 개념이다(Tankebe, 2013). 특히 정당성은 절차적 정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도 논의되는데, 과연 절차적 정의 구성요소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feelings of legitimacy)이 개선될수록 시민의 경찰기관 지지 및 경찰의 치안정책에 참여, 그리고 법에 대한 태도 역시 개선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시민들이 공권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수록 공권력에 순응하고 법을 지키려는 경향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류준혁, 2012; Tyler, 2006; Sunshine & Tyler, 2003). Chicago study에서 Tyler는 정당성 인식만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여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정도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 시도에서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의 5% 정도는 정당성의 인식 정도에 의하여 예측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발견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민들은 경찰과 같은 법집행 공권력이 시민의 순응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

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더욱 법에 순응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Sunshine & Tyler, 2003; Tyler, 2006; Tyler & Fagan, 2008; Tyler & Jackson, 2014), 경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Sunshine & Tyler, 2003)을 갖게 될 것이며, 경찰을 신뢰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경찰에 신고하고(Tyler & Fagan, 2008), 경찰의 지시 및 지도에 협조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다(McCluskey, Mastrofski, & Parks 1999; Tyler, 2006).

이하에서는 복합적인 개념인 정당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의무감(복종의무),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규범적 일치에 대하여 살펴본다.<sup>14)</sup>

#### 가. 의무감(복종의무)

Tyler (2003)는 정당성을 법적 규율이나 공권력이 갖는 자산적 속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존중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게 하는 특성이라고 설명하며, 의무감을 정당성의 가장 직접적인 징표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정당성을 구성하는 한 개념인 의무감은 두 가지 다른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기관이 도덕적으로 적정한가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및 기관행위에 대해 동의하려는 성향을 부여하는 내면화된 동조의식이다(Tyler, 2006). ‘기관의 도덕적 적정성에 대한 인식’(perceived moral appropriateness of the institution)은 그 기관이 과연 적정한 권한을 가졌는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는 그 기관이 소지한 권한 및 그 권한의 행사가 규범적으로 합리성을 갖는가에 관한 판단문제로, 권한의 규범적 합리성은 시민들이 그 기관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정하고 공평하게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인정하게 된다고 하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기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Jackson et al., 2012).

기관의 도덕적 적정성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계몽주의적 민주

14) Beetham (1991)은 정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한 가지 특성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측면의 특성을 가진 복합적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당성의 측정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명령하는 대로 그 기관의 구성원들이 시민을 대함에 있어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로 정중하고 공평하게 대할 때에, 시민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의식 및 태도, 가령 경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경찰조직 및 경찰활동을 지지하고 경찰업무에 협조하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하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Hough et al., 2016).

의무감의 또 하나의 구성요소인 '기관에 대한 내면화된 동조의식'(an internalized sense of consent to the authority)은 과연 그 기관이 복종을 요구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과 같이, 기관 그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Hough et al., 2016).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경찰이 시민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식할 때에,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순응함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서 보다는, 준법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지닌 경찰을 존중하는 마음과 의무감에서 경찰의 지도에 따르고 또한 규율을 지키게 된다고 한다(Hough et al., 2016).

#### 나. 신뢰와 신임 (trust and confidence)

만약 시민들의 시각에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비추어진다면, 시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신뢰, 신임할 것이고,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은 경찰을 위한 시민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지원, 그리고 전반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Tyler & Jackson, 2014). 이는 개인이 어떤 특정 법률의 도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그 개인이 그 법률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또한 그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법률적 행동이 기대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Barkworth & Murphy, 2014; Scheurman, 2013; Tyler, 2006). 신뢰와 신임을 바탕으로 한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는 절차적 정의를 위해 강조되고 있는 효과적이고도 의미있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의하여 구축된다고 할 것인데(Hohl, Bradford, & Stanko,

2010) 이러한 의사소통은 전체 시민사회와 경찰조직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 및 개별 시민과 경찰관 사이의 개인적 의사소통 모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Tyler와 그 동료들(Tyler, 2003, 2006; Tyler & Blader, 2003)에 의해 발전된 절차적 정의 모델은 경찰활동에서 나타난 절차의 공정성, 경찰활동의 존엄성, 그리고 경찰의 시민에 대한 존중성 등이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을 갖게 만들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신뢰하고 신임하는 경찰을 자신들과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그들의 업무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된다고 한다(Hohl et al, 2010).

Barber(1983)는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경찰관들이 (1)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형태로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기하 형성된 공감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여야 하고, (2) 자신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3) 시민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이익보다 위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은 기하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쌓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과정에 시민들과의 대면관계가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 경찰관들이 대면하는 시민들을 공평하고 품위있게 대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상호작용들은 경찰과 시민이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을 두텁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Tyler & Fagan, 2008; Sunshine & Tyler, 2003). Reisig, Bratton, 그리고 Gertz(2007)는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이 경찰에 대한 협조 및 전반적인 법 준수를 예고하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의무감은 어느 쪽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다. 규범적 일치 (normative alignment)<sup>15)</sup>

15) Tyler와 Jackson (2014)에 따르면 도덕적 일치는 본질적으로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관규범 중의 한 예로 들 수 있는 범죄율의 억제와 같은 기관의 목표는 도덕규범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도덕적 일치와 규범적 일치는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규범적 일치를 범죄율의 억제와 같은 기관의 목표에 한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연구에서는 규범을 도덕규범이나 법규범, 기관규범, 관습규범, 종교규범 등 다양한 규범의 개념을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 파악하고 사용한다.

최근 Tyler와 Jackson(2014)은 규범적 일치(normative alignment)가 정당성에 관한 연구 모델에 포함될 때에 이 모델이 시민의 준법행위를 더 잘 예측해 낼 것이라는 가정 아래 규범적 일치를 그들의 연구에 포함시켰다. 여기에서의 규범적 일치란, 시민들과 경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이 사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을 서로 공유하고, 규범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와 정도에 관한 문제이다. 규범적 일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경찰이 자신들과 비슷한 규범적 가치와 목적, 그리고 목표 등을 공유한다고 믿을 때 경찰의 권위와 권한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을 받아들이며(Bradford, Jackson, & Hough, 2013) 경찰의 권위와 권한에 더욱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Hough et al., 2013),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관하여 유럽 내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이 얼마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또는 기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시민의 인식 문제는, 시민의 경찰에 대한 도덕적 일치(moral alignment)에 대한 인식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연관이 있지만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Hough et al., 2016). 즉, 시민들은 경찰이 시민자신들과 비슷한 도덕적 관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여도, 경찰의 업무수행이 효과적이라거나 기관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과는 그리 큰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 경찰이 업무수행 중 얼마나 절차적으로 공평성을 보이는가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 문제는 경찰과 시민의 도덕적 일치에 대한 인식, 바꾸어 말하자면 경찰들 역시 시민들과 비슷한 도덕적 관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식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Hough et al., 2016). 즉 경찰의 도덕관념이 자신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시민의 경찰의 절차적 공평성에 대한 인식 역시 개선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뿐으로, 어느 한 쪽 인식이 다른 한 쪽 인식을 유발하였는가 하는 인과관계까지를 밝혀낸 것은 아니다.

## 2. 평가 (Evaluations of Performance)

시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경찰이 경쟁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다(류준혁, 2013; Tyler, 2006). Baker, Meyer, Corbett 그리고 Rudoni(1979)는 미국 중서부 도시 중 네 곳을 대상으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시민의 경찰에 대한 만족성, 경찰의 업무수행 효과성, 그리고 시민의 권리 존중성 등을 판단하는 데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가 하는 절차적 공평성이 특히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럽의 25개국을 대상으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를 경찰업무 수행의 효과성, 절차적 공평성, 그리고 업무수행결과의 공평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평가와 시민의 경찰과의 도덕적 공감성(도덕적 일치, moral alignment)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차적 공평성은 시민들의 도덕적 공감성과 관련이 있지만, 업무수행효과성 및 업무수행결과의 공평성은 도덕적 공감성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Hough et al, 2016). 경찰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만을 가지고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Tyler, 2006). 이와 같은 연구들은 Sunshine과 Tyler(2003)가 발견한 것처럼, 경찰이 대인접촉에서의 공평성(fairness of interpersonal treatment)을 보일 때, 즉 경찰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평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때,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Tankebe (2009)는 가나(Ghana)에서의 연구를 통해 경찰의 정당성이 아닌 효과성이 시민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 주요 지표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Bradford(2014) 역시 런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찰의 효과성과 절차적 공평성이 공히 경찰에 대한 협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 3. 개인의 경험

무질서(disorder),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제재위험(sanction risk), 사회 규범, 그리고 개인적 도덕성 등은 잠재적으로 정당성과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경험적 요인들이다. 시민들이 크고 작은 사회적 무질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러한 무질서 상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찰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됨과 아울러 이러한 지역사회 주민 결속도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류준혁, 2012; Payne & Gainey, 2007; Skogan, 1992), 윤우석과 홍태경(2013)의 연구에서는 무질서가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무질서가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Hough et al, 2016). 경찰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만을 가지고 시민의 법에 대한 순응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Tyler, 2006). 이와 같은 연구들은 Sunshine과 Tyler(2003)가 발견한 것처럼, 경찰이 대인접촉에서의 공평성(fairness of interpersonal treatment)을 보일 때, 즉 경찰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평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때,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Tankebe(2009)는 가나(Ghana)에서의 연구를 통해 경찰의 정당성이 아닌 효과성이 시민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 주요 지표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Bradford(2014) 역시 런던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찰의 효과성과 절차적 공평성이 공히 경찰에 대한 협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도덕성(personal morality)이 법에 대한 순응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는, 위법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개인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갖는가에 관한 연구들로 접근되었다.<sup>16)</sup>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과 일탈

16) 여기에서 거론하는 개인의 도덕성은 개인 본인의 도덕성에 한정된 것으로, 앞에서 거론한 도덕적 일치가 본인의 도덕성과 법 및 공권력의 도덕성과 비교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른 개념임에 유의하

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갖는 청소년들보다 처벌과 보상이라는 도구적 고려를 하는 청소년들이 비행 그룹에 더 많이 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Tyler, 2006). 이러한 가정은 전반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Tyler는 Chicago study에서 개인의 도덕성만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을 때 준법성(compliance)의 18% 정도가 개인의 도덕성에 의하여 설명됨을 발견하였다(Tyler, 2006). 같은 맥락에서 Schwartz와 Orleans(1967)는 사람들에게 탈세할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보다, 세금의 긍정적인 사회적 용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의 도덕성에 호소하여 납세를 독려하는 것이 세금징수 실적에 4배 가량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 제4절 통제변수

### 1. 성 별

성별이 법 및 경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대략 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법 및 경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연구(Cao, Frank, & Cullen, 1996; Reisig & Giacomazzi, 1998; Tyler, 2006)가 있고, 이에 반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법 및 경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연구(윤우석 & 홍태경, 2013; Correia, Reisig, & Loverich, 1996; Sampson & Bartusch, 1998)가 있는가 하면, 남녀의 성은 법 및 경찰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통계적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연구(Weitzer & Tuch, 2004)도 있다. 이와 같이 남녀의 성과 경찰에 대한 태도연구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

여야 한다.

## 2.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법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더욱 법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으며(류준혁, 2015; 신의기 & 강은영, 2012; 윤우석 & 홍태경, 2013; Frank, Brandl, Cullen, & Stichman, 1996; Tyler, 2006; Weitzer & Tuch, 2004), 기회가 있을 때 경찰을 도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류준혁, 2015). 연령과 법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상관관계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유사한 발견을 하고 있다.

## 3. 소득수준

개인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에 대해 우호적이고 법에 더욱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Sampson & Bartusch, 1998; Tyler, 2006)가 있는 반면, 소득수준과 경찰 및 법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연구(윤우석 & 홍태경, 2013; Ren, Cao, Lovrich, & Gaffney, 2005)도 있다. 류준혁(2015)은 시민의 정치적 성향과 경찰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연구에서 소득수준과 경찰신뢰도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을 도우려는 경향이 강함을 발견하였다.

## 4. 개인의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경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 역시 성별과 같이 세가지 형태의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연구(Reisig & Park, 2000; Tyler, 2006)가 있고, 이에 반하여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고(Hindelang, 1974)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는 연구(신의기 & 강은영, 2012)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은 경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유의미한 통계적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연구(류준혁, 2015; 윤우석 & 홍태경, 2013; Schafer, Huebner, &

Bynum, 2003)도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교육수준과 경찰에 대한 태도 연구 역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향후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의 교육수준과 법에 대한 순응과의 관계에서 Tyler(2006)는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법에 더욱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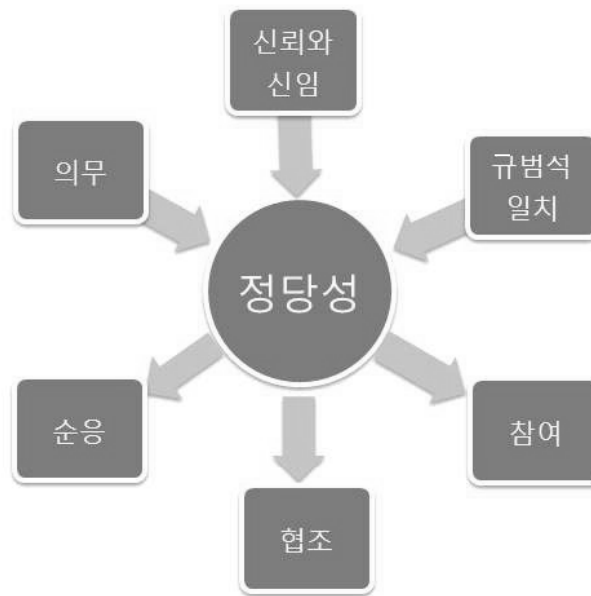
## 제3장 방법론 (Methodology)

###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 연구는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결정 요인의 하나로 경찰의 정당성에 주목하고, 먼저 이와 관련된 미국의 연구를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경찰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일반성을 검증하고, 이와 아울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원인규명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경찰정당성과 관련된 절차적 정의론을 한국 경찰정책에 맞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모형은<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성은(복종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규범적 일치로 구성되어 있고, 정당성은 시민의 법 및 공권력에 대한 순응, 법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정당성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개념은 그 조작화(operationalization) 구성요소인 의무,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규범적 일치가 병합되어 만들어 낸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정당성이고, 두 번째 개념은 각각의 조작화 구성요소인 의무,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규범적 일치를 정당성을 반영하는 개별적 개념으로 병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한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 가설 1: 경찰의 정당성은 시민 준법행위(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경찰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협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경찰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경찰의 정당성의 각 구성요소들이 각 기대행동(준법행동, 협조,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며, 이는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5: 경찰의 정책 및 관행에 절차적 정의, 정당성, 그리고 법치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적 판단은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6: 시민들의 경찰과의 접촉경험은 일반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제2절 설문 :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 1. 본 설문을 선택한 이유

경찰의 정당성을 예측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민의 준법 및 공권력에 대한 협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시민의 지역사회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인 Tyler 역시 자신의 종래 연구에 '참여' 변수를 추가하여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에 있다. Tyler가 '참여' 변수를 포함하여 진행한 최근의 연구는, ESS를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1,603명의 대표성을 가진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법원 및 경찰의 정당성과 시민들의 순응, 협조 그리고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Tyler & Jackson, 2014).

따라서 경찰정당성 및 절차적 정의의 관련성에 관한 본 연구에 이미 그 효용성과 타당성이 여러 차례 선행연구들에 의해 확인된 설문인 ESS를 채택함과 아울러, 이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이론모형의 틀을 원용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진일보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ESS는 2002년 이후 매 2년마다 유럽 내 25~3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수집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추후 그 국가들과의 연구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본 연구에서 ESS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 2. 설문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해 두 가지 설문이 활용되었다. 미국자료를 위해 Tyler와 Jackson (2014)이 ESS를 활용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내용이 활용되며, 한국자료는 ESS를 활용하여 별도로 수집되었다. 한국에서의 설문은 한국 내 특성에 맞추어 ESS를 재구성하여 10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나, 연구비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원래 설문의 틀은 유지하였다. 한국에서 사용된 설문과 미국에서 사용된 설문의 차이점을 지적하자면, 한국에서의 설문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미국연구에서 사용한 법원에 대한 시민의 인식 30개 항목들을 제외하여 설문

응답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이에 반하여 Tyler와 Jackson (2014)은 경찰 및 법원에 공히 관심을 가지고 사법시스템 전반의 정당성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 제3절 표 본

### 1. 한국

한국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어로 번역된 ESS가 활용되었다. ESS에 대한 한국어 번역과정에서 수차례 파일럿 테스트가 수행되었으며, 이후 온라인 설문조사 회사인 두잇서베이를 통해 2016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시 응답자가 한국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이 할당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잇서베이에서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이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성별, 지역, 연령에 따라 할당된 인원이 선착순으로 응답하는 형태로 설문을 완성하였다. 이들에게는 답례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소정의 포인트가 주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520명의 설문이 완성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49.4%는 남성이고, 50.6%는 여성이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6.9%는 20~29세, 17.5%는 30~39세, 22.5%는 40~49세, 34.4%는 50~59세, 8.7%는 60세 이상이었다. 학력은 28.1%는 고졸 이하, 19.6%는 2년제 졸업 또는 4년제 중퇴, 45.4%는 4년제 졸업, 6%는 석사과정 졸업, 1%는 박사과정 졸업이었다. 가계연소득은 29.4%는 3000만원 미만, 42.9%는 3000~5999만원, 27.7%는 6000만원 이상이었다. 지역은 19.6%는 서울특별시, 25.6%는 광역시, 54.8%는 도 거주자였다.

### 2. 미국: 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한 Tyler와 Jackson의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Tyler와 Jackson은 survey 연구회사인 Knowledge Networks를 이

용하여 미국 인구특성을 대표하는 2,561명의 집단표본(panel sample)을 무작위로 추출한 전화번호(random digit dialing)와 주소지를 바탕으로 하여 2012년 8월과 9월 사이에 모집하였다. 선택된 대상들과는 우편으로 접촉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을 제공하였는데, 모집된 인원 중 1,603명(62.5% 응답율)이 설문을 완성하였다. 응답자의 48%는 남성이고, 21%는 29세 이하, 26%는 30~44세, 28%는 45~59세, 그리고 26%는 60세 이상이었다. 학력은 30%가 고졸 이하, 29% 대학 경험, 그리고 29%는 대졸 이상이었다. 가계연소득은 36% \$40,000 미만, 33% \$40,000~\$84,000 그리고 31% \$85,000 이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인종은 6% Hispanic, 12% African American, 72% White, 그리고 10%는 여타 인종이었다. 이 panel sample은 Current Population Survey(2010) 및 2010 Hispanic Center Survey 등을 활용하여 미국 내 인구특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었고, 응답자의 규모 또한 미국 내 성인인구를 반영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 제4절 변수측정<sup>17)18)</sup>

### 1. 종속변수

#### 가. 순응 (Compliance)

설문은 응답자들에게 설문에 명시된 다섯 가지 위법행위를 지난 5년 간 어느 정도 하였는가 그 빈도를 질문하였고, 대답은 (1) 전혀 없음, (2) 1회, (3) 2회, (4) 3-4회, (5) 5회 이상, (9) 모르겠음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범죄는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도난물품(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사는 행위,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합산하

17) 본 연구의 방법론 중 하나인 비교연구는 한국에서 수집된 자료와 Tyler와 Jackson의 2014년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할 것이므로, 변수측정은 Tyler와 Jackson의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18)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의 내용은 부록 3의 설문을 참조하기 바람

여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alpha=.90$ ). 경미범죄는 과속운전이나 교통신호 위반,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alpha=.52$ ).<sup>19)</sup>

## 나. 협력

### 1) 경찰을 돕는 직접적 행위

설문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범죄 신고를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걸 것인가, 집 부근에서 수상하게 보이는 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그리고 경찰이 용의자를 찾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1) 거의 안할 것 같다, (2) 아마 안할 것 같다, (3) 아마 할 것 같다, (4) 거의 할 것 같다, 그리고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다. 협력은 각 항목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alpha=.70$ ).

### 2) 경찰의 정당한 무력사용의 수용

#### 가) 정당방위에 사용된 무력

길거리에서 공격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사용 및 자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사용에 대한 질문은 (1) 절대 안 된다, (2) 대체로 안 된다, (3) 대체로 그럴 수 있다, (4)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리고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되었고, 정당방위에 사용된 무력은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한 후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75$ ).

#### 나) 보복 및 저항을 위한 무력

설문 응답자는 귀하를 모욕하거나 부상 입힌 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무력사용, 이웃과

19) 변수의 측정방법으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여 측정하는 대신 합산한 답변을 답변의 갯수로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항목에 답변하지 않은 설문 응답자일지라도 가능하면 자료분석에 포함시켜 표본의 지나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변수를 모든 항목에 대한 답변의 합으로 측정한다면, 모든 항목에 답변한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의 차이의 측정이 단순히 응답한 항목의 갯수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사용, 귀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법에 항의하기 위한 무력사용, 귀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무력사용, 그리고 특정한 종교나 종교목적을 위한 무력사용 등의 질문에 대하여 (1) 아주 잘못되었다, (2) 다소 잘못되었다, (3)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 (4)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9) 모르겠다로 답변하였으며 보복 및 저항을 위한 무력은 위 5개의 항목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80$ ).

## 다. 지역사회 참여

### 1) 지역사회와의 동일성

이는 응답자가 어느 정도 자신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으로 설문은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동네)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지역민(동네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지역사회(동네)를 상징하는 것들(가령, 유명 지역인사, 지역의 중요 유적지, 관광지, 또는 특산물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를 지역사회(동네)와 별도로 떼어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의 지역사회(동네) 주민들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한다,

그리고 나의 지역사회(동네) 주민들은 나의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답변은 (1) 아주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9) 모르겠다로 하였다. 지역사회와의 동일성은 이상의 7개의 항목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87$ ).

### 2) 인식된 사회적 자본

인식된 사회적 자본은 집합적 유효성(collective efficacy)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거리를 돌아다닐 때, 아이들이 담장에 낙서를 할 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불공손하게 행동할 때, 귀하의 집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예산문제로 귀하 지역사회(동네) 경찰서나 지

구대, 파출소의 경찰관 숫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 응답자의 이웃들이 어느 정도 간섭(참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 거의 안할 것 같다, (2) 아마 안할 것 같다, (3) 아마 할 것 같다, (4) 거의 할 것 같다, 그리고 (9) 모르겠다로 응답하였다. 인식된 사회적 자본은 위 5개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70$ ).

### 3) 정치적 활동

응답자는 얼마나 자주 지방자치단체(동회, 구청, 시청 등)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지역사회(동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는가, 지방 선거에 투표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장(동장, 구청장, 시장 등)에게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는가, 그리고 지역사회(동네) 문제에 대하여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1) 거의 안 한다, (2) 극히 드물게 한다, (3) 가끔 한다, (4) 자주 한다, 그리고 (9)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하였고, 정치적 활동은 위 4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69$ ).

### 4) 경제적 활동

응답자는 얼마나 자주 지역사회(동네) 상가에서 쇼핑을 하는가, 그리고 외식, 영화 관람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해 외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 거의 안 한다, (2) 극히 드물게 한다, (3) 가끔 한다, (4) 자주한다, 그리고 (9)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하였고, 경제적 활동은 위 두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26$ ).<sup>20)</sup>

20)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두 항목 간 Cronbach  $\alpha$ 가 너무 작아, 이 항목의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가 비교연구이므로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이를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이 항목을 제거하는 것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독립변수

### 가. 정당성

정당성은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우선 일반적 정당성 지수는 법 및 경찰에 대한 의무, 법 및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 그리고 법 및 경찰과의 규범적 일체감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고, 경찰의 정당성은 경찰에 대한 의무,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 그리고 경찰에 대한 규범적 일치 세 항목의 지수를 각각 측정하였고, 마찬가지로 법의 정당성은 법에 대한 의무, 법에 대한 신뢰와 신임, 그리고 법에 대한 규범적 일치 세 항목의 지수를 각각 측정하였다.

#### 1) 정당성: 의무

##### 가) 법에 대한 복종의무

설문 참가자들은 사람들은 모든 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만약 내가 법을 어긴다면 그로 인해 나의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사람들은 법이 규정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위험한 사람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어떤 법들은 위반하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들어졌다(역측정), 법을 지키는 것보다 위반하는 것이 올바른 때가 가끔 있다(역측정), 법을 위반해도 괜찮을 때도 있다(역측정),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을 조금 위반해야 할 때가 있다(역측정) 등의 9개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에 대하여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9)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복종의무는 위 9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77$ ).

##### 나) 경찰에 대한 의무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거

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동네)의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이므로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등의 질문에 응답자는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9)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경찰에 대한 의무는 위 4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87$ ).

## 2) 정당성: 신뢰와 신임

### 가) 법에 대한 신뢰와 신임

법은 일반인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보다는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켜준다(역측정), 권력자들은 법을 사용하여 나와 같은 일반인을 통제한다(역측정), 그리고 법은 나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다(역측정) 등의 질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9)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법에 대한 신뢰와 신임은 위 3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80$ ).

### 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

나는 보통 지역사회(동네)에서의 경찰활동을 지지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경찰은 거의 언제나 법에 따라 행동한다, 경찰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역측정), 경찰은 나의 지역사회(동네)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중요시 한다(역측정), 그리고 경찰은 뇌물을 받는다(역측정) 등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9)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은 위 5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48$ ).

### 3) 정당성: 규범적 일치

#### 가) 법에 대한 규범적 일치

나는 경찰이 집행하는 법이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역사회 내에서 집행되는 법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의 지역사회 주민들은 우리 형사처벌 제도를 일반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법은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등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9)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법에 대한 규범적 일치는 위 4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82$ ).

#### 나) 경찰에 대한 규범적 일치

옳고 그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보통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비슷하다, 경찰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 일하고 있다, 경찰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 나와 경찰은 지역사회(동네) 발전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나의 지역사회(동네) 경찰관들의 가치관은 나의 가치관과 비슷하다, 그리고 경찰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일한다 등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9)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경찰에 대한 규범적 일치는 위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90$ ).

## 나. 경찰에 대한 평가

### 1) 경찰의 정확한 업무수행 (경찰의 정확성)

경찰은 가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을 체포한다(역측정), 그리고 경찰에게 체포된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등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다. 경찰의 정확성은 위 2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sup>21)</sup> ( $\alpha=.15$ ).

## 2) 경찰업무수행의 효과성(경찰의 효과성)

경찰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귀하의 지역사회(동네)에서 폭력, 폭행 사건들을 예방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찰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집이나 상가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을 체포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1) 지극히 비성공적으로부터 (11) 대단히 성공적으로의 라이커트(Likert)식 11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또한 만약 응답자의 집 가까운 곳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은 얼마나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 지극히 늦게로부터 (11) 대단히 빠른의 라이커트(Likert)식 11점 척도로 답변하였고, 경찰의 효과성은 위 3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84$ ).

## 3)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의

경찰은 얼마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가, 경찰은 사건처리를 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가, 그리고 경찰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법에 따라 결정을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다소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그리고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으며,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의는 위의 두 개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그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73$ ).

## 4) 공정한 처우

경찰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정중하게 대하는가, 경찰은 사람들의 권리를

21) 경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두 항목간 Cronbach  $\alpha$ 가 너무 작아, 이 항목의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가 비교연구이므로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이를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이 항목을 제거하는 것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존중하는가, 경찰은 그들이 대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가, 경찰은 자신들의 업무처리 및 결정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가, 그리고 경찰은 지역사회(동네)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는가 등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다소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그리고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으며,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의는 앞의 5개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그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88$ ).

#### 다. 개인적 경험에 대한 평가

개인의 경찰과의 과거 접촉경험이 그 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련의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우선 개인이 경찰과의 접촉경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어떤 이유에 서든 경찰이 귀하에게 접근, 멈추게 하거나, 접촉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지역사회(동네) 경찰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질문하였고 응답자들은 (1) 그렇다와 (2) 아니다로 답변하였다. 이 두 항목에 대해서 한 항목이라도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추가로 답변하였다.

##### 1) 의사결정의 적정성

경찰은 자신들의 할 일을 얼마나 공평(불공평)하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는 (1) 매우 불공평, (2) 다소 불공평,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공평, (5) 매우 공평,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다.

##### 2) 대우의 공평성

귀하는 경찰로부터 얼마나 공평(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는 (1) 매우 불공평, (2) 다소 불공평,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공평, (5) 매우 공평,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다.

### 3) 결과의 호감성

이어지는 질문인 경찰이 귀하에게 접근, 멈추게 하거나, 접촉한 결과 또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어느 정도 귀하가 바라는 결과를 얻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는 (1) 전혀 얻지 못함, (2) 조금 얻음, (3) 그저 그렇다, (4) 아주 많이 얻음, (5) 원하는 것 전부 얻음, 그리고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을 선택하였다.

### 4) 결과의 정확성

마지막으로 귀하가 아는 법률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찰의 업무처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는 (1) 전혀 옳지 않다, (2) 별로 옳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옳다, (5) 매우 옳다, 그리고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다.

## 라. 잠재적으로 정당성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 1) 무질서 (disorder)

십대 청소년들이 쓰레기가 널려 있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 낙서 및 타인의 재물이나 차량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 부르는 행위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조금 문제이다, (3) 큰 문제이다, (4) 대단히 큰 문제이다, 그리고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고, 무질서는 앞에서의 3개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그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55$ ).

###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fear of crime)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가는 것, 그리고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 아주 걱정된다, (2) 다소 걱정된다, (3) 별로 걱정 안된다, (4) 전혀 걱정 안된다, 그리고 (9) 모르겠다 중

에서 답변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앞에서의 2개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그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 = .81$ ).

### 3) 처벌 기대성 (sanction risk)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도난물품(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사는 행위,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어느 정도 붙잡혀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2)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3) 잡혀서 처벌받을 것 같다, (4) 거의 확실히 잡혀서 처벌받을 것이다,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고, 처벌 기대성은 앞의 3개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그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 = .85$ ).

### 4) 사회적 규범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도난물품(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사는 행위,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에 대하여 응답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응답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2)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3) 다소 나쁘게 생각할 것 같다, (4) 아주 나쁘게 생각할 것 같다,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고, 사회 규범성은 앞의 3개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그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 = .61$ ).

### 5) 개인적 도덕성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도난물품(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사는 행위,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 등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 전혀 나쁘지 않다, (2) 조금 나쁘다, (3) 나쁘다, (4) 아주 나쁘다, (9) 모르겠다 중에서 답변하였고, 개인적 도덕성은 앞의 3개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고 그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alpha = .67$ ).

## 제4장 자료 분석 및 비교

### 제1절 법과 경찰의 정당성

〈표 1〉 법과 경찰의 정당성

	정당성
일반적	2.54 (.39)
법	2.51 (.41)
복종의무	2.20 (.46)
신뢰와 신임	2.96 (.67)
규범적 일치	2.40 (.57)
경찰	2.55 (.45)
복종의무	2.67 (.67)
신뢰와 신임	2.50 (.46)
규범적 일치	2.50 (.58)

표 안의 수치들은 평균값이고 괄호 안은 표준편차이다. 측정은 1-4로 하였으며 낮은 수치는 높은 정당성을 가리킨다.<sup>22)</sup>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법과 경찰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낮은 수치가 높은 정당성을 나타내도록 설계하였다. 측정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치가 법에 대한 복종의무(2.20) 그리고 가장 높은 수치가 법에 대한 신뢰와 신임(2.96)으로 전반적으로 평균치(2.50)에 가까운 양태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보다 경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2.54), 이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경찰이 조금 낮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세분하면, 법에 대하여는 복종하여야 한다고

22) Tyler와 Jackson (2014)은 ESS 설문을 조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그들의 설문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높은 수치가 높은 정당성을 나타내고 있다.

생각하고(2.20) 규범적으로 일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2.40), 법을 그다지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2.96). 경찰에 대하여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2.67), 경찰과 우리 사회의 규범적 일치 측면 (2.50)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2.50)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표 1-1〉 법과 경찰의 정당성 (미국)

	정당성
일반적	3.47 (.56)
법	
복종의무	3.37 (.61)
신뢰와 신임	3.20 (.84)
규범적 일치	3.70 (.79)
경찰	
복종의무	3.36 (.77)
신뢰와 신임	3.38 (.70)
규범적 일치	3.61 (.79)

표 안의 수치들은 평균값이고 괄호 안은 표준편차이다. 측정은 1-5로 하였으며 높은 수치는 높은 정당성을 가리킨다.

이를 미국 시민들의 법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비교하여 보면, Tyler와 Jackson(2014)의 연구결과는 모든 항목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미국시민들의 법과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수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Tyler와 Jackson은 1에서 5까지 범위를 사용하여 높은 수치가 높은 정당성을 나타내도록 변수를 측정하였는데, 〈표 1-1〉에서와 같이 3을 평균으로 할 때 전반적인 정당성은(괄호 안은 표준편차) 3.47(.5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법에 대한 의무는 3.37(.61), 법에 대한 신뢰와 신임은 3.20(.84), 그리고 법에 대한 규범적 일치는 3.70(.79)를 나타냄으로써 시민이 전반적으로 법에 대한 정당성 인식을 평균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 대한 의무는 3.36(.77),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은 3.38(.70), 그리고 경찰에 대한 규범적 일치는 3.61(.79)로 나타나 역시 전반적으로 평균이상의 경찰에 대한 시민의 정당성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제2절 인구동태학적 특성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표 2〉 인구동태적 특성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정당성	법	경찰
나이	-.20***	-.21***	-.15**
학력	-.01	-.03	.01
소득	-.07	-.07	-.06
성별	.03	.03	.03
Adjusted R square	4.6%***	5.3%***	2.3%**

각 항목은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들이다.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Tyler와 Jackson(2014)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정당성을 일반적인 정당성과 개별적인 정당성으로 나누고, 개별적인 정당성은 법 정당성(법에 대한 의무, 법에 대한 신뢰와 신임, 그리고 법에 대한 규범적 일치)의 결합의 평균값)과 경찰 정당성(경찰에 대한 의무,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 그리고 경찰에 대한 규범적 일치의 결합의 평균값)의 두 하위그룹으로 나누었다. 일반적인 정당성은 이 두 하위그룹을 결합하여 평균치를 구함으로써 만들었다.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법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을 달리 평가하게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당성과 나이, 학력, 소득, 그리고 성별을 포함한 인구동태적 특성의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나있다. 이 회귀분석에서는 정당성이 종속변수이고 인구동태학적 특성이 독립변수이며, 표에서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변수가 상대적으로 정당성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Adjusted R square는 인구 동태학적 변수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석에 사용한 네 가지 인구동태학적 특성 중 유일하게 나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높은 연령일수록 세 가지 정당성 모두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일반적인 정당성의 4%, 법에 대한 정당성의 4.5%, 그리고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2.3%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인구동태학적 특성은 일반적인 정당성의 4.6%를 설명

해 주고 있어, 그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정당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국내외의 연구와 일치한다. Jackson과 Tyler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일반적 정당성의 4.8%, 법정당성의 5.8%, 그리고 경찰정당성의 3.2% 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 제3절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이 순응에 미치는 영향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법에 대한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주요범죄를 이용하여 측정한 주요순응(보험금 허위청구, 장물 취득, 그리고 상점물건 절도), 그리고 경미범죄(과속 및 신호위반과 쓰레기 투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미순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찰 정당성을 주요 독립변수로 한 위에 여타 변수를 통제하여 경찰 정당성이 두 형태의 순응, 즉 주요범죄 순응 및 경미범죄순응,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 중 왜도가 높게 나타난 주요범죄 순응의 자료는 변형을 통하여 정규분포성을 확보한 후에 분석을 시도하였다.<sup>24)</sup>

23) Tyler와 Jackson (2014)의 연구는 인구동태학적 특성 분석에 인종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를 첨부하여 본 연구와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관계로 그들의 인구동태학적 특성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도표는 생략한다.

24) 이 연구의 모형인 Tyler와 Jackson (2014)의 연구에서는 같은 변수(주요순응)의 극심한 왜도를 인정하면서도 자료의 변형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그들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회답을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당 변수를 변형한 방법은  $1/(X - 1.45)$  이고 이를 통하여 원래의 왜도인 4.64는 -.43으로 줄어들었다. 이 변수의 변환으로 인하여 이 주요 범죄 순응 변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높은 수치가 주요범죄를 적게 범하였다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표 3〉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이 순응에 미치는 영향

	순응 (주요)	순응 (경미)
경찰 정당성	.05	-.01
법 정당성	-.03	.15*
정확성	.02	-.04
경찰효과성	-.06	.04
처벌가능성	-.04	.00
무질서	.08	-.02
범죄에 대한 두려움	.28***	.09*
나이	-.04	.02
학력	-.02	-.06
소득	-.04	.07
성별	-.07	-.24***
Adjusted R square	8.4%***	6.5%***

각 항목은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들이다.

\* $p < .05$ , \*\* $p < .01$ , \*\*\* $p < .001$

그 결과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의 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법 정당성은 경미범죄에 대한 순응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b = .15$ ,  $p < .05$ ). 이는 시민들의 법 정당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낮은 수준의 경미범죄율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낮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주요범죄( $b = .28$ ,  $p < .001$ ) 및 높은 경미범죄율( $b = .09$ ,  $p < .05$ )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Tyler와 Jackson(2013)은 높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주요범죄 및 경미범죄율과 연관됨을 발견하여, 경미범죄 순응에서는 본 연구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시민들이 법 정당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법을 얼마나 준수하는가를 살펴 본 표 3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미범죄에 대한 높은 순응성을 보여주었다( $b = -.24$ ,  $p < .001$ ). 즉 남성이 여성보다 경미범죄를 많이 범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Tyler와 Jackson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주요범죄를 많이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정당성과 표3에 사용된 통제

변수들은 주요범죄에 대한 순응을 8.4%가량 설명하고 있으며, 경미범죄에 대한 순응은 6.5%가량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찰 정당성이 시민준법행위(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 정당성이 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표 3-1>과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Tyler & Jackson, 2014).<sup>25)</sup>

〈표 3-1〉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이 순응에 미치는 영향 (미국)

	순응 (주요)	순응 (경미)
일반적 정당성	.15***	.21***
정확성	.10*	-.03
경찰효과성	.05	-.17***
처벌가능성	.08*	.13***
무질서	.01	.12***
범죄에 대한 두려움	-.07*	-.09*
히스패닉(Hispanic)	-.13***	-.02
미국흑인(African-American)	-.03	-.07*
나이	.06*	.10***
학력	-.02	-.06
소득	.16***	.03
성별	.09***	-.01
정치성향	.05	-.05
Adjusted R square	12.00%***	10.00%***

각 항목은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들이다.

\*p<.05, \*\*p<.01, \*\*\*p<.001

25)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한미연구의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가령 미국은 다민족 국가라는 특성상 히스패닉이나 미국흑인과 같은 인종적 변수가 자료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특성상 인종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미국은 지지하는 정당을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는 등 비교적 정치성향이 잘 나타나 이와 같은 정치성향을 연구에 포함시킨 반면 본 연구는 그러한 변수가 없는 점, 그리고 Tyler와 Jackson(2014)의 연구는 법원을 포함한 일반적 사법시스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경찰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 등에서 자료분석의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 연구의 유사한 점 등에 주목하여 유사한 측면 등의 비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아래에서는 Tyler와 Jackson(2014) 연구에 나타난 도표들을 생략하도록 한다.

## 제4절 정당성과 경찰에 대한 협력

경찰에 대한 시민의 협력과 경찰 정당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협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찰 정당성을 독립변수, 그리고 법정당성, 경찰에 대한 판단 및 인구동태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경찰에 대한 협력은 경찰의 정당한 무력사용 독점에 대한 수용의 범주 안에서 정당방위를 위한 무력사용(정당방위 무력)과 보복 및 저항을 위한 무력사용(보복/저항 무력)의 두 변수를 사용하였고, 이에 더하여 종속변수에 경찰에 대한 원조를 추가하였다.

〈표 4〉 정당성과 경찰에 대한 협력<sup>26)</sup>

	경찰의 정당한 무력사용 독점에 대한 수용		경찰원조
	정당방위 무력	보복/저항 무력	
경찰 정당성	.01	.03	.03
법 정당성	.22***	.08	-.18**
정확성	-.08	.08	.01
경찰효과성	.11*	-.15**	.12*
처벌가능성	.02	.01	.11*
무질서	.13**	.01	.13**
범죄에 대한 두려움	-.13**	.08	-.11*
나이	-.06	-.05	-.08
학력	-.03	.03	.08
소득	.11*	-.13**	.07
성별	-.04	-.02	-.11*
Adjusted R square	6.3%***	8.5%***	10.1%***

각 항목은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들이다.

\*p<.05, \*\*p<.01, \*\*\*p<.001

26) Tyler와 Jackson(2014)의 연구에서는 정당성을 일반적 정당성과 개별적 정당성(법 정당성과 경찰 정당성)으로 분류하고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에서는 일반적 정당성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경찰 정당성을 사용하였다.

〈표 4〉는 경찰 정당성이 보복 및 저항을 위한 무력사용과 경찰에 대한 원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들이 개인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에 경찰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경찰의 비교적 낮은 정당성(2.55, 〈표 1〉 참조)은, 시민들로 하여금 경찰에게 원조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 외의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높은 법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 $b=.22$ ,  $p<.001$ ), 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인식( $b=.11$ ,  $p<.05$ ), 사회질서가 낮다는 인식( $b=.13$ ,  $p<.01$ ), 범죄에 대한 낮은 두려움( $b=-.13$ ,  $p<.01$ ), 그리고 높은 소득수준( $b=.11$ ,  $p<.05$ )은 정당방위를 위한 무력사용을 용인하는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인식( $b=-.15$ ,  $p<.01$ ) 그리고 높은 소득수준( $b=-.13$ ,  $p<.01$ )은 보복 및 저항을 위한 무력사용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법 정당성이 높다는 인식( $b=-.18$ ,  $p<.01$ ), 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 $b=.12$ ,  $p<.05$ ), 위법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b=.11$ ,  $p<.05$ ), 사회의 질서가 낮다는 인식( $b=.13$ ,  $p<.01$ ), 범죄에 대한 높은 두려움( $b=-.11$ ,  $p<.05$ )이 있을 때, 그리고 여성의 경우( $b=-.11$ ,  $p<.05$ )에 경찰에 협조하고자 하는 경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경찰의 정당성보다는 법의 정당성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경찰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시민들의 무력사용과 경찰협조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Tankebe(2009)의 가나(Ghana)에서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Tyler와 Jackson(2014)의 연구를 보면 경찰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은 낮은 수준의 시민들의 보복 및 저항을 위한 무력사용과 연관되어 있으나, 역시 낮은 수준의 법원에 대한 협조의향과도 관련되어 있어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에 정당방위를 위한 무력사용은 편하게 느끼나 보복 및 저항을

위한 무력사용은 주저하고, 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경찰에게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경찰 정당성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협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우 일반적 정당성이 사법 권력에 대한 협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Tyler & Jackson, 2014).<sup>27)</sup> <표 4>에 사용된 변수들은 정당방위를 위한 무력사용의 6.3%, 보복 및 저항을 위한 무력사용의 8.5%, 그리고 경찰원조의 10.1%를 설명하고 있다.

## 제5절 정당성과 지역사회 관여

본 연구는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 모델은 종속변수를 지역일체성, 그리고 독립변수를 경찰정당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른 세 모델에서는 정당성 외에도 지역일체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모델의 종속변수는 각 사회자본, 정치활동,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경찰정당성( $b=.23, p<.001$ ), 법정당성( $b=.13, p<.05$ ), 경찰효과성( $b=-.14, p<.01$ ), 범죄에 대한 두려움( $b=.10, p<.05$ ), 그리고 소득( $b=-.13, p<.01$ )이 시민의 지역일체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경찰정당성, 법정당성, 경찰의 효과성, 그리고 처벌가능성을 높게 생각할수록, 범죄에 두려움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일체성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27) 본 연구가 경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를, 경찰 및 법원을 대상으로 한 Tyler와 Jackson (2014)의 연구와 직접비교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절차적 정의론의 연구가 활발한 미국의 선행연구와 가급적 비슷한 변수들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표 5〉 정당성과 지역사회 관여

	지역일체성	사회자본	정치활동	경제활동
경찰 정당성	.23***	.05	-.01	.05
법 정당성	.13*	-.22***	-.12*	-.02
지역일체성	-	-.16**	-.30***	-.14**
정확성	-.01	.05	.03	-.04
경찰효과성	-.14**	-.03	-.06	.12*
처벌가능성	-.00	.12**	.05	.02
무질서	-.04	.09*	.03	.03
두려움	.10*	.02	.10*	-.04
나이	-.08	-.06	-.01	.00
학력	.06	.02	.04	.06
소득	-.13**	.06	.05	.11*
성별	.05	-.05	-.10*	-.01
Adjusted R square	21.6%***	9.0%***	13.9%***	5.7%***

각 항목은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들이다.

\* $p < .05$ , \*\* $p < .01$ , \*\*\* $p < .001$

두 번째 모델에서는 범정당성( $b = -.22$ ,  $p < .001$ ), 지역일체성( $b = -.155$ ,  $p < .01$ ), 처벌가능성( $b = .12$ ,  $p < .01$ ), 그리고 무질서( $b = .09$ ,  $p < .05$ )가 사회자본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범정당성, 지역일체성, 그리고 처벌가능성을 높다고 인식할 때, 그리고 무질서의 정도를 낮게 볼 때 사회자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모델은 범정당성( $b = -.12$ ,  $p < .05$ ), 지역일체성( $b = -.30$ ,  $p < .001$ ), 범죄에 대한 두려움( $b = .10$ ,  $p < .05$ ), 그리고 성별 ( $b = -.10$ ,  $p < .05$ )이 정치활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민이 범정당성과 지역일체성을 높이 가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더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일체성( $b = -.14$ ,  $p < .01$ ), 경찰효과성( $b = .12$ ,  $p < .05$ ), 그리고 소득 ( $b = -.11$ ,  $p < .05$ )이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지역일체성과 경찰효과성을 높이 인식할수록,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지역사회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찰은 치안을 중요한 사회자본이라며 경찰치안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왔는데, <표 5>는 경찰의 효과적 업무수행이 시민의 지역일체성과 경제활동을 고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당성이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우선 경찰 정당성은 지역일체성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 것에 반하여, 법 정당성은 지역일체성, 사회자본, 그리고 정치활동 모두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Tyler와 Jackson (2014)은 정당성이 지역일체성과 사회자본에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발견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제6절 시민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각 정당성 요소들의 역할

<표 6> 시민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각 정당성 요소들의 역할

		순응	경찰협력	참여
처벌위험성		-.03	.13***	.08
업무수행의 질		.12*	.15**	.18***
의무	경찰	-.09	-.02	-.13**
	법	.19***	-.13*	-.10*
신뢰와 신임	경찰	.10	.06	.07
	법	-.09	-.04	-.15***
규범적 일치	경찰	.06	.06	-.01
	법	-.02	-.11	-.11
Adjusted R square		4.1%***	7.1%**	16.7%***

각 항목은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들이다.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는 정당성의 세 가지 요소를 의무감,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규범적 일치로 보고 있고, 세 가지 구성요소를 지닌 정당성이 가져오는 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순응, 경찰협력,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당성과 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구분으로 인하여, 정당성의 어느 구성 요소가 어떠한 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유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당성의 대한 시민의 기대행동 세 가지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정당성의 세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처벌위험성과 경찰업무수행의 효과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순응은 경찰업무수행의 질( $b=.12, p<.05$ )<sup>28</sup>과 법에 대한 의무( $b=.19, p<.001$ ), 경찰협력은 처벌위험성( $b=.13, p<.001$ ), 경찰업무수행의 질( $b=.15, p<.01$ ), 그리고 법에 대한 의무( $b=-.13, p<.05$ ), 마지막으로 참여는 경찰업무수행의 질( $b=.18, p<.001$ ), 경찰에 대한 의무( $b=-.13, p<.01$ ), 법에 대한 의무( $b=-.10, p<.05$ ) 그리고 법에 대한 신뢰와 신임( $b=-.15, p<.001$ )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풀어서 해석하자면, 시민들은 경찰업무수행의 질이 높을 때와 준법에 대한 의무감이 강할 때, 법과 경찰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위법 행위시 처벌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경찰의 업무수행의 질이 높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준법에 대한 의무감이 강할 때 더욱 경찰에 협력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경찰의 업무수행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경찰과 법에 대한 의무감이 강하며, 법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 때 더욱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독립변수인 의무,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규범적 일치만 별도로 살펴보면, 법에 대한 의무는 시민의 순응 및 경찰협력과, 경찰 및 법에 대한 의무 그리고 법에 대한 신뢰는 참여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법에 대한 시민의 의무감은 순응, 경찰협력, 그리고 참여라는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행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경찰에 대한 의무감은 참여에만 연관되어 있다. 법에 대한 신뢰와 신임 역시 참여에 관련되어 있음을 볼 때, 한국사회의 시민들은 경찰보다는 법에 대한 정당성

28) 경찰업무수행의 질은 경찰업무의 정확성, 효과성, 의사결정 공평성, 그리고 처우의 질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달리 강력한 검찰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사법제도 환경을 생각할 때, 시민들이 미국경찰에 비해 권한이 축소된 경찰의 정당성을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의 업무수행의 질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한다. <표 6>은 경찰업무수행의 질이 순응, 경찰협력, 그리고 참여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시민들은 범법에 대한 처벌의 위협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더욱 경찰에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민들이 사법제도가 범법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납득할만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경찰 정당성의 각 구성요소들이 각 기대행동(준법행동, 협조, 참여)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우선 경찰의 정당성 중 경찰에 대한 의무만 유일하게 시민의 반응 중 참여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으로, 경찰의 정당성이 시민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에 대한 의무가 시민의 순응, 경찰협력 및 참여와 연관되어 있고, 또한 법에 대한 신뢰와 신임이 시민의 관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법 정당성이 시민의 의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yler와 Jackson(2014)에서는 일반적 정당성 중 의무는 순응과 협력, 신뢰와 신임 역시 순응과 협력, 그리고 규범적 일치는 협력과 참여에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 제7절 경찰과 법에 대한 일반적 판단이 경찰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의 일반적 정당성 및 경찰에 대한 개별적 정당성 평가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에 나타난 모형을 보면, 두 변수(처우의 질 및 정확성)가 모든 종속변수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반적 정당성은 의사결정이 공평하고 ( $b=-.10$ ,  $p<.05$ ), 경찰의 시민에 대한 처우의 질이 높고( $b=-.33$ ,  $p<.001$ ), 경찰이 업무를 정확히

하고( $b=.323, p<.001$ ), 그리고 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때( $b=-.16, p<.001$ )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에 대한 의무감은 경찰 처우의 질이 높고 ( $b=-.16, p<.01$ ), 경찰업무가 정확하며( $b=.29, p<.001$ ), 남성의 경우( $b=.10, p<.05$ )에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은 경찰처우의 질이 높고( $b=-.26, p<.001$ ), 업무가 정확 하며( $b=.27, p<.001$ ), 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 $b=-.10, p<.05$ ) 높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과의 규범적 일치는 처우의 질 ( $b=-.32, p<.001$ ), 정확성( $b=.17, p<.001$ ), 업무 효과성( $b=-.22, p<.001$ ), 그리고 소득( $b=-.09, p<.05$ )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표 7〉 경찰과 법에 대한 일반적 판단이 경찰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정당성	의무	신뢰와 신임	규범적 일치
의사결정 공정성	-.10*	-.08	-.10	-.07
처우의 질	-.33***	-.16**	-.26***	-.32***
정확성	.32***	.29***	.27***	.17***
경찰효과성	-.16***	-.05	-.10*	-.22***
처벌가능성	-.04	-.06	-.02	.01
무질서	.01	.02	-.05	.04
두려움	.02	.05	.00	-.04
나이	-.08	.06	.03	-.05
학력	-.02	.06	.01	-.05
소득	-.05	-.01	-.01	-.09*
성별	.01	-.01	-.06	-.04
Adjusted R square	52.1%***	21.0%***	30.8%***	37.6%***

각 항목은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들이다.

\* $p<.05$ , \*\* $p<.01$ , \*\*\* $p<.001$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절차적 정의의 한 측면인 처우의 질이 일반적 정당성 및 개별적 경찰 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경찰처우에 예민하게 반응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의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경찰의 정책 및 관행, 가령 의사결정의 공평성, 처우의 질, 경찰의 업무수행의 정확성 및 효과성에 대한 판단이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우선 의사결정공평성이 일반적 정당성과, 그리고 처우의 질, 정확성은 모든 정당성, 마지막으로 경찰효과성은 경찰에 대한 의무만을 제외한 모든 정당성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Tyler와 Jackson(2014) 역시 거의 유사한 발견을 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공평성은 신뢰와 신임, 처우의 질 및 정확성은 모든 정당성, 그리고 효과성은 신뢰와 신임만을 제외한 모든 정당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상의 발견들을 살펴보면, 경찰의 절차적 정의에 관한 관행 중 처우의 질이 시민의 경찰 및 사법기관에 대한 인식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8절 인적 경찰접촉 경험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표 8〉에서 사용된 개인의 경찰접촉 경험들은 지난 2년 동안 모든 경험들을 합산하여 구한 평균치를 나타낸다. 경찰의 정당성 연구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개인이 과거 경찰과 접촉한 경험이 있을 때, 그러한 개인의 경찰과의 접촉경험이 그 개인의 현재 경찰 정당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 일이다. 따라서 〈표 8〉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위에 경찰 정당성을 종속변수로 두고 개인의 과거 경찰과의 접촉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8〉 인적 경찰접촉 경험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경찰 정당성	
	일반적 정당성	접촉 경험 관련 정당성
적정 절차	-.29**	-
의사결정의 공정성	-	-.30**
대우의 질	-	-.12
결과의 호감성	-.04	-.02
결과의 정확성	-.23*	-.15
나이	-.07	-.06
학력	.05	.05
소득	-.05	-.04
성별	.07	.06
Adjusted R square	24.1%***	26.7%***

각 항목은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들이다.

\* $p < .05$ , \*\* $p < .01$ , \*\*\* $p < .001$

적정절차는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대우의 질을 결합하여 그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대우의 질이 결합된 적정절차를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었을 경우, 경찰의 일반적 정당성은 절차가 적정하고( $b = -.29$ ,  $p < .01$ ) 결과가 정확할수록 ( $b = -.23$ ,  $p < .001$ )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정절차를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대우의 질로 나누어 모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찰의 일반적 정당성은 유일하게 의사결정의 공정성( $b = -.30$ ,  $p < .01$ )에 의하여서만 영향을 받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경찰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개인은 그 접촉경험에서 공정성을 경험하였는가 여부에 의하여 현재 경찰의 일반적 정당성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찰과의 접촉결과가 좋았었는가 나빴었는가 하는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역시 절차적 정의의 구성요소들

이 개인의 뇌리에 오래 남아 경찰의 현재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시민들의 경찰과의 접촉경험이 경찰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적정절차에 대한

과거의 경험은 현재 경찰정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정절차 중에서도 의사결정의 공평성에 대한 경험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 경험하였던 경찰업무수행 결과의 정확성 역시 현재 경찰 정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Tyler와 Jackson(2014)의 연구에서는 과거 개인의 적정절차, 의사결정의 공평성, 그리고 처우의 질에 대한 경험 모두가 현재 경찰 정당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찰업무수행의 정확성은 아무런 관련을 보이고 있지 않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제5장 토의, 한계 및 향후 연구

### 제1절 토 의

이상과 같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고찰하면, Tyler와 Jackson(2014)의 연구가 거의 모든 적정절차 요소들이 법, 경찰 및 법원의 정당성 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그러한 정당성에 대한 인식들이 법 및 공권력에 대한 순응, 공권력에 대한 협조,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라는 정당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경찰에 대한 정당성 평가 및 시민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는 Tyler와 Jackson의 연구에서와 같은 전형적인 결과 대신 시민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은 경찰에 대한 순응, 협조 및 참여에 산발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경찰의 정당성은 시민의 순응 및 경찰에 대한 협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지만, 지역사회와의 일체성( $b=.23, p<.001$ )과는 긍정적인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고<표 5>, 경찰의 정당성과 법 정당성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시민의 태도와 행동을 보았을 때 역시 경찰에 대한 높은 의무감은 높은 지역사회 관여( $b=-.13, p<.001$ )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6>.

이렇듯 양쪽 연구의 결과가 달리 나타난 것에 대하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1. 한미 양국 경찰정당성 연구결과 차이의 원인

#### 가. 자료분석의 기술적인 요인

우선 자료 분석의 기술적인 요소로서, Tyler와 Jackson(2014)의 연구는 법원을 변수에 포함시키고 법, 경찰, 그리고 법원을 포함한 일반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경찰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법원을 제외하고 경찰 정당성을 따로 분리한 것이 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Tyler와 Jackson은 인종(ethnicity), 정치성향(party), 지역까지를 포함시켰는데, 이 세 변수가 자료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한미 양국 연구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 나. 한미 양국 경찰의 권한 및 위상의 차이

다음으로 한국경찰과 미국경찰의 권한의 차이가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찰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찰의 통제를 받고 영장조차도 검사를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 경찰의 경우는 경찰이 1차 수사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있어서 한미 양국 간 경찰권한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sup>29)</sup>

한미 경찰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 역시 양국 경찰에 대한 시민 인식의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숫자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18,000여개 정도의 미국 경찰기관들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한국 경찰에 비해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는 미국 경찰이 노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한 중앙집권화된 경찰이 아닌 지방분권화된 경찰 조직의 영향, 또한 보안관(sheriff)과 같은 직위는 주민 선거로 선출되는 등의 인선과정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진다.<sup>30)31)</sup>

29) 2010년도 8월경 남편이 휴스턴 검찰청의 인사과장(검사)인 필자의 지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지역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그 남편이 경찰관 앞에서 아내를 타하고 지역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선처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한미간 경찰-검찰 관계의 큰 차이를 직접 목도하기도 하였다. 그 경찰관은 선처요구를 거부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하며 절차에 따라 필자의 지인을 입건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

30) 50개 주 및 16개 영토로 구성된 미국(Shah & Reich, 1997)에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판사나 검사, 그리고 경찰기관의 장(주로 보안관)을 주민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고, 검사의 경우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검사가 있는가 하면, 치안 판사(justice of the peace)가 되기 위해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었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치안판사로 임용된다는 사실 등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법제도와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31) 2009년 7월 16일 하버드 대학 흑인 교수인 Henry Louis Gates Jr.가 캠브리지 지역 경찰인 James Crowley 경사에게 자신의 집 앞에서 신분을 밝혔음에도 체포되었을 때에, 경찰이 인종차별한 것이 아닌가

### 다. 역사적인 경험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건국 이후로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아 본 경험이 없고 또한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경찰에 비하여, 일제식민지 경찰로 자국민을 탄압하고 근래까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민주화 운동 및 세력을 탄압한 경험이 있는 한국경찰에 대한 시민의 정당성 인식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문화적 차이

또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한미 간의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차이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가령 총기소지가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미국사회에서는, 총기사용으로 인한 치명적 사고의 가능성을 항상 감안하고 있는 경찰의 업무수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고 이에 저항하는 데에 따른 위협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비하여,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치명적 사고가능성이 낮아 경찰의 업무수행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저항도, 낮은 위협부담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겠다. 일례로, 미국 경찰은 사소한 경우라도 안전 확보를 이유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용의자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만약 한국에서 경찰이 중요범죄의 용의자가 아닌 자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였다면 한다면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미국경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용인하는 공권력 사용의 범위가 넓고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높음에 반하여, 한국경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용인하는 공권력의 범위가 좁고 또한 시민들의 저항도 빈번

하는 것이 문제화 되었고, 연방정부 대통령인 Obama 역시 경찰의 인종차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가 경찰 노조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자신의 언급을 후회한다면서 철회하였다. 그리고 동년 7월 30일 대통령 Obama와 부통령 Joe Biden은 Crowley경사를 백악관에 초청하여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beer summit)은 유명한 일화이다 (Patterson, 2011). 지역경찰의 한 경사 계급의 경찰관을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이와 같이 대우하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예시한다면, 본 연구의 <표 1>의 한국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무,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규범적 일치 등이 평균 또는 평균 이하임을 보여줄 때(평균 2.5에서 경찰에 대한 복종의 무 2.55, 신뢰와 신임 2.50, 그리고 규범적 일치 2.50; 본 연구에서 높은 수치는 낮은 의무감,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규범적 일치를 나타냄) Tyler와 Jackson(2014)의 연구에서는 평균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평균 3에서 경찰에 대한 의무 3.36, 신뢰와 신임 3.38, 그리고 규범적 일치 3.61; 이 연구에서는 높은 수치가 높은 의무감,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규범적 일치를 나타냄).

#### 마. 비대한 한국 검찰권력으로 인한 한국 경찰의 역할 축소

이러한 기본적인 문화의 차이 위에 전통적으로 관준민비 사상이 강함에 더하여, 엘리트 지향적인 한국사회에서 수사의 개시로부터 형의 집행까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사에 비하여, 한국 경찰은 미국경찰만큼 시민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경찰의 정당성 역시 시민들의 관심을 덜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미국경찰에 대비되는 한국의 법집행기관은 딱히 한 기관을 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미국경찰이 치안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경찰이 이에 해당하겠지만, 한국 검찰도 소년계도, 범죄예방위원회운영, 그리고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 홍보 등의 치안활동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미국경찰이 수사의 제반 사항들을 주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수사의 주체기관인 검찰이 미국경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찰에게는 없는 기소권이 한국 검찰에게는 있어서 두 기관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소권이 있는 미국검찰이 한국검찰과 비슷한가 생각해보면, 미국 검찰은 수사를 주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한국검찰이 가지고 있는 형집행권이 없어 다르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양국의 외양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관의 권한에 큰 차이가 있을 때 그러한 권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직접 한미 양국 경찰기관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체급이 다른 두 권투선수

를 체급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 정당성에 관한 양국 시민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진다.

만약 경찰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재량권 행사에 대한 판단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한국 경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미국 경찰의 재량권 행사가 시민의 경찰 정당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한국 경찰은 비교적 적은 권한으로 좁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형성에 경찰의 정당성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 경찰이 수행하는 치안 및 수사업무의 상당부분을 한국에서는 검찰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더욱 세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검찰을 연구범위에 넣어야 하고, 그랬을 경우에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미 양국 간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 및 사법체계, 그리고 경찰, 검찰의 위치 및 위상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경찰정당성에 관한 한미 양국의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2. 왜 경찰의 활동은 절차론을 통하여 평가되어야 하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한미 양국 간의 경찰 비교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위에, 우리는 왜 절차적 정의론이 시민의 경찰 및 사법기관,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경찰을 평가할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경찰이 무엇을 하였는가'하는 경찰활동의 결과론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과정론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견 '경찰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경찰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경찰활동의 결과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대신 경찰활동을 평가할 때에는 비교적 답하기 용이한 '경찰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절차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것이다. 절차평가가 결과평가보다 용이한 이유는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sup>32)</sup>

### 가. 미시적인 측면

우선 미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이 개인적으로 경찰활동을 평가할 때에 경찰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경찰들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1차적 대면집단이 주축이 아닌 2차적인 이익집단이 주축인 비대면사회의 특성이 강한 사회로 전이되어 왔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역학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개개의 시민들은 사회제도 및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그 영향이 크거나 혹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그리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 및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만약 개인이 어떤 기관이나 제도를 평가할 때 그 기관이나 제도로부터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그리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모든 혜택 및 불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많은 경우에 그런 모든 경우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제도나 기관의 행위는 혜택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는 경우도 있어, 더욱 결과의 유리하거나 불리함을 계산하는 문제를 어렵게 한다.<sup>33)</sup> 즉, 사회제도나 기관으로 부터 개인이 받는 혜택이나 불이익은 어느 몇 가지 자명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계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경찰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측면에 관심을 둔 절차론적 관점은 경찰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는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

32) 절차평가가 결과평가보다 용이한 이유는 Tyler(2006)의 연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였다.

33) 가령, 경찰이 과속단속을 강화한 결과 어떤 개인이 과속단속에 걸려 벌금을 납부한다면, 그 개인은 벌금납부라는 재정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할 것이나, 동시에 경찰의 과속단속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속도를 줄인 결과 운전의 안전성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형사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행정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그 외에도 경찰절차에 준거를 제공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각종 법규, 규칙, 예규, 그리고 명령 등이 경찰의 행동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 행동의 절차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성문화된 기준을 이용하는 절차평가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찰행동의 결과 평가에 비하여 장점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행동' 그 자체 역시 그 경찰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비하여 비교적 관찰이 쉽기 때문에, 개개의 시민들은 관찰 및 평가가 어려운 경찰행동의 결과적 측면보다는, 관찰 및 평가가 용이한 절차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약 시민들이 경찰이 진행하는 절차를 공평하다고 느낀다면, 최소한 자신들이 소속된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납득할 만큼 보호될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Ophuls(1977)의 절차적 정치학에서 제시되었다. 즉 Ophuls는 사람들이 사회기관의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 그 행위가 근거한 절차에 주목하면서 그 절차에 납득할 때에 비로소 만족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 나. 거시적인 측면

시민들이 경찰을 평가할 때에 경찰행동의 절차에 주목하여야 하는 거시적인 이유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구성체로 이루어진 복잡한 우리 사회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증가 및 산업화로 인하여 그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측면 등에서 다원화를 경험하여 왔고 현재에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다원, 다양화된 사회 내에서 경찰이 이질적 구성체의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누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본다면, 경찰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결과 지향적 평가로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sup>34)</sup> 그에 반하여 경찰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절차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결과평가를 주장한다면, 누가 결과를 평가할 것인가, 누구의 이익을 우선 평가할

의 공정성이나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같은 비교적 합의점에 도달하기 쉬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록 공정성에 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정한 절차는 공공의 의사에 의하여 미리 마련할 수 있고, 공정성은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는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결과 지향적 평가에 비하여 절차 지향적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Bellah, Madsen, Sullivan, Swidler, & Tipton, 1985; Schwartz, 1978). 따라서 이와 같은 미시적, 거시적 이유로 인하여 경찰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절차지향적 평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과론적 평가는 그 보완으로 활용함이 옳다고 사료된다.

## 제2절 한계 및 향후 연구

### 1.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설문참가자의 대표성 부족으로 인한 연구결과 일반화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회원제로 운용되는 유료 설문조사 회사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참가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위 설문조사 회사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이 본 연구 일반화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설문 참가자의 과거 경찰과의 접촉 경험으로 인한 현재 경찰 정당성의 평가는, 과거 경찰과의 접촉 경험을 비자발적 접촉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을 자발적으로 접촉한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것인가 등의 기술적, 절차적인 문제가 따른다고 할텐데, 그 위에 결과 평가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반영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따른다고 하겠다. 여기에서의 논지는 결과평가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바, 원래 설문인 ESS는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등 서양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한국 국민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번역된 설문 내에 한국의 실정과 한국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문항들이 있을 수 있다.<sup>35)</sup> 이러한 문제는 외국에서 작성된 설문을 번역을 통해 사용하는 연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점으로, 엄격한 방법론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관계(causal relationship)에 관해서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단면적 자료(cross-section data)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만 밝힐 수 있을 뿐이고, 변수 간의 원인 결과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한계적인 요인으로서 설문참가자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력의 정확성, 설문에 대한 응답의 정직성, 그리고 여타 설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DeVellis, 2012; Sapsford, 2007).

## 2. 향후 연구의 방향

따라서 향후 경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무작위 추출조사(random sampling)를 할 것이 요망되고, 경찰과의 자발적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의 설문을 설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실정과 한국국민에게 맞는 설문을 연구하여 개발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변수 간의 원인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단면적 자료보다는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를 사용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조사기법상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5) 앞서 보았듯 일부 항목에서 동일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간 Cronbach  $\alpha$ 가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ESS의 일부 문항이 한국국민의 정서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유럽이나 미국사회의 시각에서는 같은(비슷한) 개념을 측정하는 질문문항이 한국인들에게는 다른 개념을 묻는 문항일 수 있다. 예를 들어, ESS에서 경찰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2가지 질문은 "경찰은 가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을 체포한다", "체포된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이다. 과거 군부시대를 거친 한국인(많은 한국인)은 선행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후행 질문에 역시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군부시대(비민주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유럽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선행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고, 후행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 제6장 정책제시<sup>36)</sup>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설득과 같은 부드러운 수단을 택하는 것이 강제와 같은 강한 수단을 택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회통념임을 감안할 때 (Nye, 2005) 경찰은 비단 그들이 섬기는 시민들과 접촉할 때뿐만이 아니라, 경찰조직 내의 구성원들 특히 하위계급에 속한 구성원들을 관리할 때에 근거하는 조직의 정책에 도 절차적 정의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President's Task Force, 2015). 비록 가설 1(경찰의 정당성은 시민 준법행위, 순응도, 에 영향을 미칠 것) 및 가설 2(경찰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협조에 영향을 미칠 것)는 한국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지만, 미국 및 유럽에서의 선행연구들이 위의 가설들을 지지하는 것을 감안하고, 한국경찰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 경찰정책 내의 절차적 정의요소를 포함시킬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경찰훈련에도 절차적 정의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절차적 정의에 근거한 훈련이 경찰관들을 더욱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다(Hough et al., 2016). 이와 아울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찰정당성은 지역일체성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고(가설 3), 참여와도 관련이 있으며(가설 4), 경찰의 정책 및 관행, 특히 의사결정의 공평성 및 처우의 질 등이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가설 5)을 감안하면, 경찰훈련 프로그램 내에 절차적 정의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비록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여도, 만약 경찰훈련 내에 절차적 적정성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이 없다면, 경찰관들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36) 이하의 정책제시는 Tom Tyler가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한 특강 (2014), Mastrofski의 강의 (2014), 그리고 National Conference 2015 (2015)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러한 희망을 합리적인 기대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훈련에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지향한 경찰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에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만약 경찰이 절차적 정당성에 입각한 훈련을 그 철학을 망각한 채 시민을 다루기 위한 기술적 측면만 강조하여 시행하거나, 또는 실제 개개인의 경찰관이 시민의 순응 및 협조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하여 시민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시민으로부터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고 하는 것이다 (Hough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Tyler(2006)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로부터 발견한 높은 수준의 규범적 관여(혹은 몰입, normative commitment)는 경찰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하고 있다. 시민 개인이 이러한 규범적 관여를 통해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까지는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과 아울러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사회화 과정이나 교육은 오랜 시간과 함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

이 시민들에게 경찰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는 노력 역시 시민들이 경찰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한 일환으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정의를 지향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 제1절 기관강령(Mission Statement)

경찰기관의 강령에 절차적 정의에 관한 문구를 명확히 사용함으로써, 기관의 절차적 정의 실현의지를 모든 구성원들이 알도록 함과 동시에 기관 구성원들이 절차적 정의에 관한 개념을 알도록 한다. 절차적 정의 경찰활동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는 절차적 정의 경찰활동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 공히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으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찰활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 제2절 경찰훈련 프로그램

경찰훈련은 외부지향적 훈련과 내부지향적 훈련을 동시에 시작하여 절차적 정의에 관한 개념이 경찰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론보다는 실습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일수록 체계화된 실증적인 증거에 근거한 교육과정(curriculum)을 사용하여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우선 내부적으로 경찰 기본교육 및 직장 훈련 시 공평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경찰서 단위로 시작하여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상사부터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에게도 공평성에 관한 경찰의 정책을 알리고 경찰이 운용하는 시민경찰학교 등에서도 시민들에게 공평성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공평성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에는 가급적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훈련관을 먼저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교육훈련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정작 교육을 받아 조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위계급자들이 업무 등의 핑계로 교육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관료적 계급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변화는 상위계급자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한 상위계급자들은 일상업무를 통해 일선경찰관들의 업무방향을 시달하고, 경찰훈련의 계획수립 및 시행, 평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상위계급자라고 하여 공평성에 관한 지식이나 교육자격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기관과 구성원인 경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하여야 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교육의 성과를 반드시 실증적으로 측정하여야 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성과는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도 피드백을 받아야 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는 교육자 및 피교육자로부터 받도록 하며, 교육자에 대한 피교육자의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그리고 평가에 관하여는, 현재 한국 경찰 내외부에 경찰이 비교적 용이하

게 활용할 수 있는 박사급 학자들이 다수 있으므로 그들을 활용한다면 본 목적의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교육의 실시, 성과의 측정, 그리고 교육의 평가 등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경찰기관의 장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전시성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단기간에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는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고, 실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제3절 경찰문화와 관행 개선

경찰관이 시민과 접촉할 때 이전보다 조금 친절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는 정도로 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은 진지하게 그들의 태도 및 업무 관행을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므로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경찰문화의 개선을 병행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신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절차적 정의를 위한 실질적 대화과정에서 하여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여야 한다.

우선 하여야 할 것들의 예로, 경찰관은 시민들과 대화를 할 때 시민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상대방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화 도중에는 적당한 때에 긍정적인 몸동작을 취해주고 또한 공감을 표시한다.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무엇을 왜 했는가, 무엇을 왜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는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달리 처우되는가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말도 긍정적인 어법으로 하도록 하고, 시민에게 신체적이나 감성적인 도움, 정보 및 조언의 제공이나 그 외에 시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돕도록 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시민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경찰이 쓰는 용어 및 전문용어 등을 피하도록 하고, 무례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하며, 외설적인 표현도 피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시민에게 배려심이 없는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과 관련된 증인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경찰관과 대화하는 시민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무력 및 강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관성이 없는 언행을 피하고, 특히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는 삼가하여야 한다.

## 제7장 결 론

절차적 정의론에 입각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은 실증적 증거에 근거한 유망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과거 경찰과의 접촉경험은 그들이 현재 경찰의 절차적 정의에 관한 정책해석에 영향을 미친다(Tyler, 2006). 만약 어떤 개인이 과거에 경찰과의 접촉한 경험으로 인하여 이미 경찰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고 있다면, 그는 경찰의 행동을 공평하지 못하게 보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Tyler, 2006).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자신들이 보호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불공평하게 보는 경향에 의하여 불만스럽거나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견해, 즉 선입견은 현재 경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합리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경찰은 시민의 과거의 경험을 다룰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시민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는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들이 과거에 가진 경찰과의 접촉에서 받은 경험 중 현재 경찰관의 정당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찰관의 의사결정의 공평성<표 8>이었음을 생각할 때, 절차적 정당성의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에 기여하는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시민들이 경찰과 접촉할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의 정당성을 낮게 평가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준법에 대한 의식도 저하될 것이고, 그러한 흐름은 경찰업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Tyler, 2006). 아울러, 우리는 시민들이 왜 법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보상과 처벌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대신에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시민행동은 사법기관 및 법의 정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경찰은 시민들을 보상유인과 처벌로 통제하려는 정책 대신, 우리 사회에 법과 사법기관의 수용성을 촉진하는 규범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 류준혁 (2012),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분석. 사회과학연구, 38(3), 171-200.
- \_\_\_\_\_ (2013), 위계선형 모형 사용을 통한 시민의 경찰인식 영향 요인분석. 한국범죄학, 7(2), 57-100.
- \_\_\_\_\_ (2015), 시민의 정치적 성향과 경찰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55-75.
- 신의기 · 강은영 (2012),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구총서(4), 1-310.
- 윤병훈 · 성용은 (2015), 한국 지역주민의 법준수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경찰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4(4), 349-376.
- 윤우석 · 홍태경 (2013), 지역주민들의 경찰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0(1), 53-78.

### II. 외국문헌

#### 1. 단행본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eetham, D. (1991), The legitimation of power. London, U.K.: Macmillan.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M., Swidler, A., & Tipton, S. M. (1985), Habits of the hear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adford, B., Jackson, J., & Hough, M. (2013). Police legitimacy in action: Lessons for theory and practice. In M. D. Reisig & R. Ka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ce and policing.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ear, T. R. (2007), Imprisoning communities: How mass incarceration makes dsadvantaged neighborhoods wo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Vellis, R. (2012),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uropean Social Survey. (2011). *Trust in justice: Toplin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 Topline Results Series Issue 1.
- European Social Survey. (2012). *Policing by consent: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eetham, D. (1991). *The legitimation of power*. London, U.K.: Macmillan.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M., Swidler, A., & Tipton, S. M. (1985), *Habits of the hear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adford, B., Jackson, J., & Hough, M. (2013). *Police legitimacy in action: Lessons for theory and practice*. In M. D. Reisig & R. Ka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ce and policing*.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ear, T. R. (2007), *Imprisoning communities: How mass incarceration makes disadvantaged neighborhoods wo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Vellis, R. (2012),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uropean Social Survey. (2011), *Trust in justice: Toplin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 Topline Results Series Issue 1.
- European Social Survey. (2012), *Policing by consent:national system*. In J.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Free Press.
- Kennedy, D. M. (2009), *Deterrence and crime prevention: Reconsidering the prospect of sanction*. New York: Routledge.
- Levi, M. (1997), *Consent, dissent, and patriot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ader, I., & Walker, N. (2006), Necessary virtues: The legitimate place of the state in the production of security. In J. Wood & B. Dupont (Eds.), *Democracy, society and the governance of security* (pp. 165-19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trofski, S. D. (Producer), (2014, 7/16/2016). Procedural justice and police legitimacy. [Lectur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uMYtvjIYyLA>
- National Network for Safe Communities (Producer). (2015, 8/10/2016). Applying procedural justice and police. National Conference 2015.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buNFH4QSMYQ>
- Nye, J.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 Ophuls, W. (1977), *Ecology and the politics of scarcity*. New York: W.H. Freeman & Co.
- Parsons, T. (1967), Some reflections on the place of force in social process. In T. Parsons (Ed.), *Sociological theory and moder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President's Task Force. (2015), *Final repor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 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Retrieved from [http://www.cops.usdoj.gov/pdf/taskforce/taskforce\\_\\_finalreport.pdf](http://www.cops.usdoj.gov/pdf/taskforce/taskforce__finalreport.pdf).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einer, R. (2000), *The politics of the police* (3rd e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Sapsford, R. (2007), *Survey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cheingold, S. (1974), *The politics of right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Schmallegger, F., & Worrall, J. L. (2010), *Policing toda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Shah, D. K., & Reich, M. W. (1997), *U.S. Insular areas: Application of the U.S. Constitution*. Collingdale, PA: Diane Publishing.
- Skogan, W. G. (1992),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rhood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hibaut, J., & Walker, I. (1975), *Procedural justice*. Mahwah, NJ: Erlbaum.
- Tyler, T. R. (2006), *Why people obey the law*.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yler, T. R., & Blader, S. L. (2000), *Cooperation in groups*.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Tyler, T. R., & Huo, Y. J. (2002), *Trust in the law: Encouraging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urts*. New York: Russell-Sage Foundation.
- Wright, R., & Decker, S. (1997), *Armed robbers in action: Stickups and street culture*.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2. 논 문

- Baker, R., Meyer, F. A., Corbette, A. M., & Rudoni, D. (1979). Evaluation of police service in medium-sized cities. *Law & Policy*, 1(2), 235-248.
- Barkworth, J. M., & Murphy, K. (2014). Procedural justice policing and citizen compliance behavior: The importance of emotion. *Psychology, Crime & Law*, 21(3), 254-273.
- Bradford, B. (2014). Policing and social identity: Procedural justice, inclusion, and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ublic. *Policing and Society*, 24(1), 22-43.
- Cao, L., Frank, J., & Cullen, T. F. (1996). Race, community contex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5(3), 1-22.
- Clear, T. R. (1996). Backfire: When incarceration increases crime. *Journal of the Oklahoma Criminal Justice Research Consortium*, 3(2), 1-10.
- Correia, M. E., Reisig, M. D., & Lovrich, N. P. (1996). Public perceptions of state police: An analysis of individual-level and contextual variabl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1), 17-28.
- Dai, M., Frank, J., & Sun, I. (2011). Procedural justice during police-citizen encounters: The effects of process-based policing on citizen compliance and demeano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2), 159-168.
- Dean, D. (1980). Citizen ratings of the police: The difference contact makes. *Law & Policy*, 2(4), 445-471.

- Decker, S. (1981).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A review of past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9(1), 80-87.
- Doob, A. N., & Webster, C. M. (2003). Sentence severity and crime: Accepting the null hypothesis. *Crime & Justice*, 30, 143-195.
- Engel, R. S. (2005). Citizens' perceptions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injustice during traffic stops with poli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2(4), 445-481.
- Fisher, M. T. (1988). Harmless error, prosecutorial misconduct, and due process: There's more to due process than the bottom line. *Columbia Law Review*, 88(6), 1298-1324.
- Frank, J., Brandl, G. S., Cullen, T. F., & Stichman, A. (1996). Reassessing the impact of race on citizen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 A research note. *Justice Quarterly*, 13(2), 321-334.
- Friedland, N., Thibaut, J., & Walker, L. (1973). Some determinants of the violation of rul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 103-118.
- Hindelang, M. J. (1974). Public opinion regarding crime, criminal justice, and related topic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1(2), 101-116.
- Hohl, K., Bradford, B., & Stanko, E. A. (2010). Influencing trust and confidence in the London Metropolitan Police: Results from an experiment testing the effect of leaflet drops on public opinio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0(3), 491-513. doi: 10.1093/bjc/azq005
- Hyde, A. (1983). The concept of legitimation in the sociology of law. *Wisconsin Law Review*, 379-426.
- Jackson, J., Bradford, B., Hough, M., Myhill, A., Quinton, P., & Tyler, T. R. (2012). Why do people comply with the law? Legitimacy and the influence of legal institution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2(6), 1051-1071.
- Jackson, J., Huq, A. Z., Bradford, B., & Tyler, T. R. (2013). Monopolizing force? Police legitimacy and public attitudes toward the acceptance of violen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9(4), 479-497
- Kochel, T. R. (2012). Can police legitimacy promote collective efficacy. *Justice*

- Quarterly, 29(3), 384-419. doi: 10.1080/07418825.2011.561805
- Levinson, W., Roter, D. L., Mullooly, J. P., Dull, V. T., & Frankel, R. M. (1997).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 The relationship with malpractice claims among primary care physicians and surgeons. *Jama*, 277(7), 553-559.
- McCluskey, J. D., Mastroski, S. D., & Parks, R. B. (1999). To acquiesce or rebel: Predicting citizen compliance with police requests. *Police Quarterly*, 2(4), 389-416.
- Murphy, K. (2009).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e: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justice and police performance in police-citizen encounter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2(2), 159 - 178. doi:10.1375/acri.42.2.159
- Murphy, K., & Cherney, A. (2012). Understanding cooperation with police in a diverse socie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2(1), 181-201.
- Paternoster, R., Saltzman, L. E., Waldo, G. P., & Chiricos, T. G. (1984).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Do sanctions really deter? *Law and Society Review*, 17, 457-479.
- Patterson, R. E. (2011). The "Beer Summit" and what's brewing : Narratives, networks, and metaphors as rhetorical confinement in the age of Obama. *Communication Studies*, 62(4), 439-455.
- Payne, K. B., & Gainey, R. R. (2007). Attitudes about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in disadvantaged neighborhoods: The influence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ptions of a drug problem. *Criminal Justice Review*, 32(2), 142-155.
- Reisig, M. D., Bratton, J., & Gertz, M. G. (2007).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finement of process-based policing measur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8), 1005-1028. doi: 10.1177/0093854807301275
- Reisig, M. D., & Giacomazzi, A. L. (1998). Citizen perceptions of community policing: Are attitudes toward police important?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1(3), 547-561.
- Reisig, M. D., & Park, B. R. (2000). Experience, quality of life, and neighborhood context: A hierarchical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17(3), 607-630.
- Ren, L., Cao, L., Lovrich, N. P., & Gaffney, M. (2005). Link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Community police can make a

- differ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1), 55-66.
- Sampson, J. R., & Bartusch, D. J. (1998). Legal criticism and (subcultural?) tolerance of deviance: The neighborhood context of racial differences. *Law & Society Review*, 32(4), 777-804.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 - 924. doi:10.1126/science.277.5328.918
- Sargeant, E., Wickes, R., & Mazerolle, L. (2013). Police community problems: Exploring the role of formal social control in shaping collective efficac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6(1), 70-87. doi: 10.1177/0004865812470118
- Schafer, A. J., Huebner, M. B., & Bynum, S. T. (2003). Citizen perceptions of police services: Race, neighborhood context, and community policing. *Police Quarterly*, 6(4), 440-468.
- Scheuerman, H. L.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injustice and crime: A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1(6), 375-385.
- Schwartz, R. D. (1978). Moral order and sociology of law: Trends, problems, and prospec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 577-601.
- Schwartz, R. D., & Orleans, S. (1967). On legal sancti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34(2), 274-300.
- Smith, P. E., & Hawkins, R. O. (1973). Victimization, types of citizen police contacts and attitudes toward the police. *Law & Society Review*, 8(1), 135-152.
- Sunshine, J., & Tyler, T. R. (2003). Moral solidarity, identification with the community, and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justice: The police as prototypical representatives of a group's moral valu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6(2), 153-165.
- Tankebe, J. (2009).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Ghana: Does procedural fairness matter? *Criminology*, 47(4), 1265-1293.
- Tankebe, J. (2013). Viewing things differently: The dimensions of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Criminology*, 51(1), 103-135.
- Tyler, T. R. (2003).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Crime & Justice*, 30, 283-357.

- Tyler, T. R., & Blader, S. L. (2003). Procedur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cooperativ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4), 349-361.
- Tyler, T. R., & Fagan, J. (2008). Legitimacy and cooperation: Why do people help the police fight crime in their communities?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6, 231-275.
- Tyler, T. R., & Folger, R. (1980).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aspects of satisfaction with citizen-police encounter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 281-292.
- Tyler, T. R., & Jackson, J. (2014). Popular legitimacy and the exercise of legal authority: Motivating compliance, cooperation, and engagement.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1), 78-95.
- Tyler, T. R., Rasinski, K. A., & Griffin, E. (1986). Alternative images of the citizen: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American Psychologist*, 41(9), 970-978.
- Watson, A. C., & Angell, B. (2012). The role of stigma and uncertainty in moderating the effect of procedural justice on cooperation and resistance in police encounters with persons with mental illnes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9(1), 30-39.
- Weitzer, R., & Tuch, A. (2004). Race and perceptions of police misconduct. *Social Problems*, 51(3), 305-325.
- Wells, W. (2007). Type of contact and evaluations of police officers: The effects of procedural justice across three types of police-citizen contac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6), 612-621.

## 부록 1: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값

변수	범위	높은 평균	개수	평균 (표준편차)	
주요 순응	1-5	불순응	519	1.14 (.52)	
경미 순응	1-5	불순응	504	1.75 (.95)	
경찰 협력	1-4	협력적	512	3.09 (.65)	
정당방위 무력사용	1-4	무력사용 호의적	514	3.60 (.56)	
보복/저항 무력사용	1-4	무력사용 호의적	513	1.96 (.61)	
지역 일체감	1-4	낮은 일체성	514	2.49 (.60)	
사회 자본	1-4	높은 인식	514	2.61 (.58)	
정치 활동	1-4	높은 활동	516	2.20 (.68)	
경제 활동	1-4	높은 활동	517	3.23 (.61)	
의무	경찰	1-4	낮은 의무감	508	2.67 (.67)
	법	1-4	낮은 의무감	518	2.20 (.46)
신뢰와 신임	경찰	1-4	낮은 신뢰, 신임	516	2.50 (.46)
	법	1-4	낮은 신뢰, 신임	515	3.00 (.67)
규범적 일치	경찰	1-4	낮은 규범적일치	507	2.50 (.58)
	법	1-4	낮은 규범적일치	509	2.40 (.57)
정확성	1-4	낮은 정확성	502	2.44 (.55)	
효과성	1-11	높은 효과성	520	5.57 (1.87)	
의사결정의 공정성	1-4	높은 공정성	504	2.75 (.55)	
처우의 질	1-4	공정한 대우	509	2.59 (.59)	
무질서	1-4	낮은 무질서	519	3.09 (.53)	
두려움	1-4	낮은 두려움	519	1.68 (.70)	
처벌 가능성	1-4	높은 두려움	516	2.84 (.79)	
개인적-의사결정 공정성	1-5	공정한 결정	192	3.34 (.97)	
개인적-처우의 질	1-5	공정한 대우	189	3.35 (1.01)	
개인적-결과의 호감성	1-5	호감적 결과	189	2.78 (1.06)	
개인적-결과의 정확성	1-5	정확한 결과	195	3.35 (.98)	

## 부록 2: 주요 변수의 영차상관 (Zero Order Correlation)

	주요순응	경미순응	경찰협력	정당무력	보복무력	지역일체	사회자본	정치활동	경제활동	경찰의무	경찰신뢰	경찰규범	범의무	범신뢰	범규범
주요순응	1														
경미순응	.334**	1													
경찰협력	-.017	.10	1												
정당무력	-.072	.077	.108*	1											
보복무력	.258**	.083	-.106*	.012	1										
지역일체	.073	-.013	-.232**	.032	.197**	1									
사회자본	.123**	-.021	.280**	-.016	.113**	-.199**	1								
정치활동	.237**	.090*	.165**	-.067	.099*	-.337**	.316**	1							
경제활동	-.027	.073	.228**	.111*	-.127**	-.211**	.115**	.128**	1						
경찰의무	.012	-.042	-.123**	.047	.148**	.305**	-.111*	-.183**	-.087*	1					
경찰신뢰	.101*	.074	-.111*	.060	.135**	.194**	-.119**	-.080	-.066	.330**	1				
경찰규범	.065	.040	-.132**	-.004	.171**	.398**	-.094*	-.108*	-.081	.403**	.469**	1			
범의무	.136**	.160**	-.205**	.039	.288**	.287**	-.121**	-.076	-.130**	.279**	.383**	.378**	1		
범신뢰	-.106*	.042	-.124**	.214**	.007	.134**	-.228**	-.242**	-.019	.148**	.399**	.218**	.289**	1	
범규범	.073	.005	-.193**	-.022	.238**	.384**	-.086	-.103*	-.172**	.453**	.457**	.700**	.421**	.215**	1

## 부록 3: 설 문

〈설문문항: ESS 한글번역, 국내 설문조사시 사용〉

### I. 기대 행동

#### A. 규범관련

Q1 귀하는 지난 5년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나요?

-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 도난물품(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사는 행위
- 상점에서 물품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
- 과속운전이나 교통신호 위반
- 쓰레기 불법 투기

측정: (1) 전혀 없음 (2) 1회 (3) 2회 (4) 3-4회 (5) 5회 이상 (6) 모르겠음

#### B. 협조관련

Q2. 1. 경찰 및 사법시스템

##### a. 경찰협조

- 귀하는 범죄신고를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 귀하는 집 부근에서 수상하게 보이는 자를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 귀하는 경찰이 용의자를 찾으려 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측정: (1) 거의 안할 것 같다 (2) 아마 안할 것 같다 (3) 아마 할 것 같다  
(4) 거의 할 것 같다 (5) 모르겠다

Q3. b. 사법시스템 협조

만약 어떤 사람이 행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 행인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면...

- 귀하는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 만약 귀하가 유일한 목격자라면 범인을 지목할 용의가 있는가요?
  - 귀하는 법정에서 그 범법자에 대하여 증언하시겠습니까?
- 측정: (1) 거의 안할 것 같다 (2) 아마 안할 것 같다 (3) 아마 할 것 같다  
(4) 거의 할 것 같다 (5) 모르겠다

#### Q4. 2. 무력행사 관련

##### a. 정당방위를 위한 무력사용

- 길거리에서 공격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사용
  - 자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사용
- 측정: (1) 절대 안 된다 (2) 대체로 안 된다 (3) 대체로 그럴 수 있다  
(4) 당연히 그래야 한다 (5) 모르겠다

##### Q5. b. 보복이나 항의를 위한 무력사용

다음과 같은 무력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귀하를 모욕하거나 부상입힌 한 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무력사용
  -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사용
  - 귀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법에 항의하기 위한 무력사용
  - 귀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무력사용
  - 특정한 종교나 종교목적을 위한 무력사용
- 측정: (1) 아주 잘못되었다 (2) 다소 잘못되었다 (3)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  
(4)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5) 모르겠다

#### C. 참여

##### Q6. 1. 지역사회와의 동질성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나요?

-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동네)에 자부심을 느낀다
- 나는 지역민(동네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자부심을 느낀다
- 나는 지역사회(동네)를 상징하는 것들 (가령, 유명 지역인사, 지역의 중요 유적지, 관광지, 또는 특산물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나를 지역사회(동네)와 별도로 떼어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나의 지역사회(동네) 주민들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한다
- 나의 지역사회(동네) 주민들은 내가 지역사회(동네)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존중한다
- 나의 지역사회(동네) 주민들은 나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측정: (1) 아주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모르겠다

### Q7. 2. 사회자본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때 귀하의 이웃들은 어느 정도 간섭(참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거리를 돌아다닐 때
- 아이들이 담장에 낙서를 할 때
-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불공손하게 행동할 때
- 귀하의 집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 예산문제로 귀하 지역사회(동네)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의 경찰관 숫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

측정: (1) 거의 안할 것 같다 (2) 아마 안할 것 같다 (3) 아마 할 것 같다  
(4) 거의 할 것 같다 (5) 모르겠다

### Q8. 3. 외부활동 1

귀하는 얼마나 자주...

- 지방자치단체(동회, 구청, 시청 등)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지역사회(동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시나요?
- 지방선거에 투표하시나요?
- 지방자치단체장(동장, 구청장, 시장 등)에게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시나요?
- 지역사회(동네) 문제에 대하여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나요?

측정: (1) 거의 안 한다 (2) 극히 드물게 한다 (3) 가끔 한다  
(4) 자주 한다 (5) 모르겠다

#### Q9. 4. 외부활동 2

귀하는 얼마나 자주...

- 지역사회(동네) 상가에서 쇼핑을 하시나요?
- 외식, 영화관람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해 외출하시나요?

측정: (1) 거의 안 한다 (2) 극히 드물게 한다 (3) 가끔 한다  
(4) 자주 한다 (5) 모르겠다

## II. 기여활동

### A. 정당성

#### Q10. 1. 의무

##### a. 적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나요?

- 사람들은 모든 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 만약 내가 법을 어긴다면 그로 인해 나의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 사람들은 법이 규정한대로 지켜야 한다
- 법을 어기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위험한 사람이다
- 법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측정: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Q11. a. 적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나요?

- 어떤 법들은 위반하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들어졌다
- 법을 지키는 것보다 위반하는 것이 올바른 때가 가끔 있다
- 법을 위반해도 괜찮을 때도 있다
-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을 조금 위반해야 할 때가 있다

측정: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Q12. b. 경찰에 대한 대응**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나요?

-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경찰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 지역사회(동네)의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이므로 경찰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측정: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Q13. 2. 신뢰와 신임**

**a. 법에 대하여**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는가요?

- 법은 일반인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보다는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켜준다
- 권력자들은 법을 사용하여 나와 같은 일반인을 통제한다
- 법은 나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다

측정: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 Q14. b. 경찰에 대하여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는지요?

- 나는 보통 지역사회(동네)에서의 경찰활동을 지지한다
- 사람들을 대할 때 경찰은 거의 언제나 법에 따라 행동한다
- 경찰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
- 경찰은 나의 지역사회(동네)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중요시 한다
- 경찰은 뇌물을 받는다

측정: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 Q15. 3. 규범에 대하여

##### a. 법에 대한 규범적 일치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는지요?

- 나는 경찰이 집행하는 법이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다
- 나는 지역사회 내에서 집행되는 법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 나의 지역사회 주민들은 우리 형사처벌 제도를 일반적으로 지지한다
- 우리 사회의 법은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측정: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 b. 경찰에 대한 규범적 일치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는지요?

- 옳고 그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보통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비슷하다

- 경찰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 일하고 있다
- 경찰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
- 나와 경찰은 지역사회(동네) 발전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 나와 지역사회(동네) 경찰관들의 가치관은 나의 가치관과 비슷하다
- 경찰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일한다

측정: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 Ⅲ. 고려해야 할 행동

#### A. 판단

#### Q17. 1. 사법권력에 대하여

##### a. 경찰의 정확성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는지요?

- 경찰은 가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은 체포한다
- 경찰에게 체포된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

측정: (1) 아주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 Q18. b. 경찰의 효율성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 귀하의 지역사회(동네)에서 폭력, 폭행 사건들을 예방하고 있나요?
- 집이나 상가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을 체포하고 있나요?

측정: (1): 지극히 비성공적으로 - (11): 대단히 성공적으로

**Q19. b. 경찰의 효율성**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집 가까운 곳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면...

- 경찰은 얼마나 빨리 올 것이라 생각하나요?

측정: (1) 지극히 늦게 - (11): 대환히 빨리

**Q20. c.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의**

경찰은...

-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나요?

- 사건처리를 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나요?

-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법에 따라 결정을 하나요?

측정: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다소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모르겠다

**Q21. d. 공정한 처우**

경찰은...

-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정중하게 대하나요?

-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나요?

- 그들이 대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나요?

- 자신들의 업무처리 및 결정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나요?

- 지역사회(동네)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나요?

측정: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다소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모르겠다

**Q22. 2. 개인적 경험**

지난 2년 동안...

- 어떤 이유에서든 경찰이 귀하에게 접근, 멈추게 하거나, 접촉한 적이 있나요?
- 귀하는 지역사회(동네) 경찰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측정: (1) 그렇다 (2) 아니다

**Q23. 경찰과 접촉한 경우 1**

- 경찰은 자신들의 할 일을 얼마나 공평(불공평)하게 처리하였나요?
- 귀하는 경찰로부터 얼마나 공평(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나요?

측정: (1) 매우 불공평 (2) 다소 불공평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공평 (5) 매우 공평 (6) 모르겠다

**Q24. 경찰과 접촉한 경우 2**

- 경찰이 귀하에게 접근, 멈추게 하거나, 접촉한 결과 또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어느 정도 귀하가 바라는 결과를 얻었나요?

측정: (1) 전혀 얻지 못함 (2) 조금 얻음 (3) 그저 그렇다  
(4) 아주 많이 얻음 (5) 원하는 것 전부 얻음 (6) 모르겠다

**Q25. 경찰과 접촉한 경우 3**

- 귀하가 아는 법률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찰의 업무처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측정: (1) 전혀 옳지 않다 (2) 별로 옳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옳다 (5) 매우 옳다 (6) 모르겠다

## B. 정당성 및 행위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

### Q26. 1. 무질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0대 청소년들이 쓰레기가 널려 있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
- 낙서 및 타인의 재물이나 차량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 부르는 등의 행위

측정: (1)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조금 문제이다 (3) 큰 문제이다  
(4) 대단히 큰 문제 이다 (5) 모르겠다

### Q27.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귀하는 어느 정도 아래 사항들이 귀하에게 일어날까 걱정되나요?

-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가는 것
-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

측정: (1) 아주 걱정된다 (2) 다소 걱정된다 (3) 별로 걱정 안된다  
(4) 전혀 걱정 안된다 (5) 모르겠다

### Q28. 3. 처벌가능성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붙잡혀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 도난물품(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사는 행위
- 상점에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

측정: (1)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2)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3) 잡혀서 처벌받을 것 같다 (4) 거의 확실히 잡혀서 처벌받을 것이다  
(5) 모르겠다

**Q29. 4. 사회규범**

만약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귀하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 도난물품(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사는 행위
- 상점에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

측정: (1)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2)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3) 다소 나쁘게 생각할 것 같다 (4) 아주 나쁘게 생각할 것 같다  
(5) 모르겠다

**Q30. 6. 개인적 도덕**

다음 사항들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 도난물품(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사는 행위
- 상점에서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행위

측정: (1) 전혀 나쁘지 않다 (2) 조금 나쁘다 (3) 나쁘다  
(4) 아주 나쁘다 (5) 모르겠다

**Q31. 연가계 소득**

- (1) 1,000만원 미만 (2) 1,000-1,999만원 (3) 2,000-2,999만원 (4) 3,000-3,999만원  
(5) 4,000-4,999만원 (6) 5,000-5,999만원 (7) 6,000-6,999만원 (8) 7,000-7,999만원  
(9) 8,000-8,999만원 (10) 9,000-9,999만원 (11) 1억 원 이상

**Q32. 학력**

- (1) 고졸 (2)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4년제 중퇴 (3) 4년제 대학 졸업  
(4) 석사학위 소지 (5) 박사학위 소지

**Q33. 성별**

- (1) 남자 (2) 여자

**Q34. 지역**

- (1) 서울 (2) 부산 (3) 인천 (4) 대전 (5) 광주 (6) 대구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남도 (11) 충청북도 (12) 전라남도 (13) 전라북도  
(14) 경상남도 (15) 경상북도 (16) 제주도

